

체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kr>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3
- 주요인사 / 4
- 외교관계 / 4
- 주한주재 국기관 / 5
- 한국과의 주요이슈 / 6

II. 경제

- 경제정책 / 6
-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 7
- 주요 산업 동향 / 9
- 정보조사 자료원 / 15

III. 경제무역통계

- 거시경제 통계 / 16
- 무역통계 / 16
- 투자통계 / 20

IV. 출장가이드

기후 / 23
시차.근무시간 / 24
도량형 / 24
출입국.비자 / 24
환율.환전 / 26
물가정보 / 27
교통.통신 / 29
호텔.식당 / 31
관공서 관행 / 34
공휴일 / 34
여행시 유의사항 / 35
유용한 연락처 / 36
관광명소 / 37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1
수입규제제도 / 41
관세제도 / 42
주요인증제도 / 42
지적재산권 / 43
소비자보호제도 / 43
교역관련 국가기관 / 44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45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4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47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47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49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50
운송 / 50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52
유형별 분쟁사례 / 52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53

우리기업 투자동향 / 54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55

투자인센티브 / 59

타당성조사 / 62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65

입지선정 / 69

공장 설립 / 73

투자관련 정부기관 / 76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7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80

조세제도 / 83

외환관리 / 84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5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현지어: Ceska Republika) 1993.1.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은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위 치	북위 48-51 도, 동경 12-19 도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인접)
면 적	78,864 km ² (한반도의 1/3, 산악: 평지=3:7)
기 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음 (연평균 9-10 도)
수 도	프라하 (Praha)
인 구	1,028 만 명 (2006 년 9 월말 기준)
주요 도시	프라하(119 만명), 브르노(37 만명), 오스트라바(31 만명), 올로모츠(23 만명), 플젠(16 만명)
민족(인종)	체코. 모라비아인(94%), 슬로바키아인(2%), 기타(4%)
언 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6.2%), 회람 정교(3.4%), 무교(40%), 기타(11.2%)
건국일(독립일)	1918. 10. 28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Vaclav Klaus 대통령 (Mirek Topolánek 총리)
입 법 부	양원제 (상원 81 명, 하원 200 명)
화폐단위	Czech Crown (CZK, Kc)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정부 (2006. 8 월 최신자료)

나. 경제 지표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US\$ 억)	618	753	914	1,082	1,243
실질 경제성장률(%)	2.5	1.9	3.6	4.2	6.1
1 인당 GDP(US\$)	6,048	7,379	8,955	10,602	12,152
구매력 평가 기준 1 인당 GDP(US\$)	15,744	16,907	17,428	18,733	20,417
가계소비증가율(%)	2.3	2.2	6.0	2.5	2.4
소비자 물가 상승률(%)	4.7	1.8	0.1	2.8	1.9
실업률(%)	8.1	7.3	7.8	8.3	7.9
명목 임금 인상률(%)	8.7	7.3	6.6	6.6	5.4
국가 부채(CZK 십억)	345.0	395.9	493.2	592.9	691.2
국가 부채/GDP(%)	14.7	16.1	19.1	21.3	23.2
평균 환율(US\$:Kc)	38.038	32.736	28.227	25.701	23.947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중앙 은행, IMF, UNECE(2006. 12 월 최신 자료)

- 산업구조(2005년): 제조업(31.8%), 서비스업(58.4%), 건축업(6.8%), 1차 산업(3.0%)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액(2005년 말 누계): 595억 달러

교역 규모

(단위: US\$ 백만,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00	28,998	10.5	32,107	14.3	-3,109
2001	33,358	15.0	36,453	13.5	-3,095
2002	38,504	15.4	40,735	11.7	-2,231
2003	48,709	26.5	51,239	25.8	-2,530
2004	67,194	37.9	68,245	33.2	-1,051
2005	78,210	16.4	76,528	12.1	1,682
2006 (1-10 월)	77,227	19.7	75,327	20.0	1,900

자료원: 체코 통계청(2006. 12 월 최신 자료)

- 주요교역품
 - 수출: 기계류, 수송기기, 기초 금속 제품, 철강 제품, 비철금속 제품
 - 수입: 기계류, 수송기기, 화학 제품, 철강 및 금속 제품, 원유 및 가스

다. 한-체코 관계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관계 수립(90.3) -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90.10 서명, 91.4발효) - 항공 협정 (90.10 서명 및 발효) - 항공 협정 개정(편명 공유 조항 등 신설) 협상 타결(04.5)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 보장 협정 (92.4 서명, 95.3 발효) - '00 - '02간 문화 교류 시행 계획 의정서 서명 (2000.5) - 문화 협정(94.10 서명, 발효) - 사증 면제 협정(94.10 서명, 94.11 발효) - 과학 기술 협력 협정(95.3 서명, 95.4 발효) - 원자력 협력 협정 (2001.3 서명)
한-체코 투자 교류	145 백만 불(우리나라 진출), 전무(국내 유치)/ 2006년 9월 말 기준
교민 현황	약 1,000 여명

자료원: 주체코대사관, 수출입 은행(2006. 12 월 최신 자료)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체코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실권이 거의 없으며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내각에서 실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선출하고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2회까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으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고 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2회까지 지명한 총리가 내각구성에 실패할 경우 총리 지명권은 하원의장이 가진다.

가. 행정부

행정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지는데, 중앙정부는 총리, 부총리 및 각부장관으로 구성되고 내각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신행정부 신임 안을 하원에 상정한다. 지방정부(자치단체)는 특별시(PRAHA)를 포함하여 14개 대지역과 77개 중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77개 중 지역에는 6,251개의 단위 행정조직(Municipality)이 있다.

나. 사법제도

법원의 경우 최고법원, 최고행정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지방법원으로 나뉘어진다. 헌법재판소는 10년의 임기를 가진 15명의 판사들로 구성되며 위헌 또는 기본권에 관한 국제 조약과 배치되는 법률폐지, 지방 자치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평,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 등을 결정한다.

다. 의회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The Chamber of Deputies)의 경우 대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상원과 더불어 헌법·법령 제정, 개정, 조약 비준 동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원이 재표결을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 채택이 가능하다. 이외에 상원과 더불어 대통령을 선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예산 승인·감사, 국내외 정책 등을 심의한다. 상원(The Senate)의 경우 임기 6년의 81명으로 구성된다.

라. 선거제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5년마다 선출(간접선거)되며, 총리는 하원 최다수 득표 정당에서 대통령이 지명 후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상원의원은 국민 직접 선거에 의해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총 81명)되며 하원의원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매 4년마다 선출된다(최근 총선은 2006.6.2-6.3 실시).

3. 주요인사

대통령 (President)	Vaclav Klaus (ODS)
총리 (Prime Minister)	Mirek Topolánek (ODS)
상원의장 (President of the Senate)	Přemysl Sobotka (ODS)
하원의장 (Chairperson, Chamber of Deputies)	Miloslav Vlček (CSSD)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장관 (Labour & Social Affairs)	Petr Nečas (ODS)
내무부장관 겸 정보과학부 장관 (Interior & Informatics)	Ivan Langer (ODS)
외무부장관 (Foreign Affairs)	Alexandr Vondra
국방부장관 (Defence)	Jiri Sedivy
재무부장관 (Finance)	Vlastimil Tlustý (ODS)
법무부장관 (Justice)	Jiri Pospisil (ODS)
교통부장관 (Transport)	Ales Rebecek (ODS)
산업무역부장관 (Industry and Trade)	Martin Riman (ODS)
농무부장관 (Agriculture)	Milena Vicensova
보건부장관 (Health)	Tomas Julinek (ODS)
교육·청년·체육부장관 (Education, Youth and PT)	Miroslava Kopicova
환경부장관 (the Environment)	Petr Kalas
문화부장관 (Culture)	Martin Stepanek
지역개발부 장관 (Regional Development)	Petr Gandalovic (ODS)

- 주 : 1. ()는 소속 정당으로 ODS는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 CSSD는 사회민주당(Czech Social Democratic Party) 임
2. 각부 장관의 경우 하원의 신임획득에 실패하여 2006.12.27 현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중으로 상기 장관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신 내각 발족 시까지 잠정적으로 업무 수행
- 자료원: 체코 정부사이트 (2006.12월 최신자료)

4. 외교관계

체코의 외교 노선은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정치·경제적 연계 강화, 구주통합 지지 및 개도국들과 관계 긴밀화를 통한 전 방위 외교 등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대외정책 방향은 자본 및 기술도입선으로서 서방제국과의 협력증대를 추구하며 GCSE(구주 안보·협력 체제) 체제 강화에 중점 노력을 기울이고 대 EU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대 EU 연계 강화의 경우 '91.12월 EU와 유럽협정이 체결되었으며 ('93. 1.1 일부 체코연방 분리 독립에 따라 '93.6.23일 체코-EU간 유럽협정 재체결) 1995년 2월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EU 준 회원국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5월 1일부터 EU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EFTA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92.7.2일 체코-EFTA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체코 국민의 해외여행 개방 및 외국인의 체코 국민 개방을 위해 국경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원유, 천연가스, 기타 천연자원의 공급선 확보 및 주요 수출시장으로서의 관계 유지, 구 소련에 대한 35 억불의 채권회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독립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새로운 대등·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한 전방위 외교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국가와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체코의 무기수출이 대외정책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93.1.1 일부로 분리된 이후 '94.6.1 일부로 OLD BLOCK 을 종결, 계류중인 OLD BLOCK 채권, 채무는 NEW BLOCK 으로 환산, 이체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99년 1월 양국간 재산권 분할 협정을 체결하였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와는 비셰그라드 4 자 협력체(Visegrad Four)를 맺고 있으며,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동 협의체를 상호협력 및 EU 내에서의 협조채널로 계속 활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체코는 총 17 개의 UN 산하기구에 가입(IFAB 제외)하고 있으며 WORLD BANK, IMF, COUNCIL OF EUROPE, WTO, OECD('95.11.28) 등 총 61 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체코는 1999년 3월 12일부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군사적인 면에서 완전히 서구 진영으로 편입되었으며, 여전히 NATO 회원국이다.

5. 주한주재국기관

주한체코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1번지
TEL	(02) 725-6765
FAX	(02) 734-6452
E-mail	seoul@embassy.mzv.cz
WEB	www.mzv.cz/seoul

주한체코관광청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1 효령빌딩 1105
TEL	(02) 776-9837
FAX	(02) 773-1203
E-mail	smchoi@czechtourism.com
WEB	www.czechtourism.com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경제 문제와 관련 양국간 이슈는 없으며,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004년 5월 체코는 북한에 대사관(대리대사급)을 개설하였으며 동 대사관을 활용하여 EU 회원국으로서 EU의 대북 정책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

□ 주요 외교일지

- 양국 무역사무소 설치 협정(89.11)
- KOTRA 프라하 한국 무역관 개설(90.2)
- 양국 외교 관계 수립(90.3)
- 주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개설(90.6)

□ 양국간 체결 협정

-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90.10 서명, 91.4 발효)
- 항공 협정(90.10 서명 및 발효)
- 항공 협정 개정(편명 공유 조항 등 신설) 협상 타결(04.5)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 보장 협정(92.4 서명, 95.3 발효)
- 문화 협정(94.10 서명, 발효)
- 사증 면제 협정(94.10 서명, 94.11 발효)
- 과학 기술 협력 협정(95.3 서명, 95.4 발효)
- 원자력 협력 협정(2001.3 서명)
- 한.체코 사회보장협정(2006.6 가서명)

II . 경제

7. 경제정책

체코 정부는 대내외 균형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현대화를 위한 투자 및 국가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 지원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를 위해 직접 투자 지원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CzechInvest(체코 투자청)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CzechTrade(체코 무역청), EGAP(수출보험공사) 및 수출은행을 통한 대외 수출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체코 정부는 체코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요 전략 기업들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EU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2004년 5월 1일부로 EU 정 회원국이 되면서 각종 법규 및 제도를 EU와 일치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실질 소득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가계 소비의 증가 영향으로 2002 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2003 년 3.6%의 실질 성장을 보였던 체코 경제는 2004 년 들어 5 월 1 일 EU 가입에 따른 고정자본 투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가계 소비지출이 2.5%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2%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EU 가입의 효과를 만끽하였다.

2005 년에도 고유가 등에 따른 서유럽의 경기 둔화와 가계 소비 증가율이 2.8%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증과 수출호조 영향으로 1/4 분기 5.4%, 2/4 분기 6.1%, 3/4 분기 5.9%로 매 분기마다 분기 성장률 기록을 갱신한 데 이어 4/4 분기에는 체코 역사상 가장 높은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동부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6.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2006 년 들어서도 그 동안 부진을 보였던 소매판매가 가처분소득의 증가 영향으로 1 월에 7.0% 성장을 보인데 이어 6 월에는 7.9% 증가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와 같은 소매판매의 호조가 주로 내구소비재의 판매호조에 기인하고 있어 체코의 내수경기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수 및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2006 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6.6%를 기록하는 등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체코 경제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 소득의 증가 영향으로 가계 소비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라 수출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경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호조를 반영하여 체코 재무부는 금년 10 월 발표한 거시 경제 전망에서 2006 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0%로 발표하였으며, IMF 는 6.0% EIU 와 OECD 는 6.2%로 전망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체코 경제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가. 재정 적자

현재의 EU 기준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조건으로 재정 적자는 GDP 의 3%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EU 통계청 따르면 체코의 공공 재정 적자 규모는 금융 부문 구조 조정 등의 여파로 2003 년에 GDP 의 12.5%에 달했으며, 이는 EU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5 년 말 기준 체코의 총 외채는 458 억 달러 규모로 이는 GDP 의 37%에 달하고 있다.

2004 년에는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고 정부 기금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긴축재정에 힘입어 공공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되었던 GDP 의 3.9% 수준보다 크게 낮아진 2.9%로 개선되었으나, 2005 년에는 재정개혁의 지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증가로 다시 3.6% 확대되었다.

재정적자가 2006 년에는 GDP 의 4%, 2007 년에는 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체코의 재정 적자문제는 강력한 정부의 부재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재정개혁의 지연으로 당초 목표였던 2008 년까지 GDP 의 3% 이내 달성이 불가능 한 실정에 있어 체코의 유로

화 공식 사용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유로화의 공식 도입시기를 2010년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나. 인플레이션

크라운화의 강세와 식료품 및 의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임금 및 석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으나, 2004년에는 EU 가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Excise tax 변경 등의 영향과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였다.

2005년에는 노동 생산성의 빠른 향상에 따른 단위 당 노동 비용 상승률의 둔화와 크라운화의 강세 및 소매업의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물가 상승률이 1.9%에 그쳤으나, 2006년에는 연초의 전기료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및 담배 소비세 등의 인상영향으로 8월까지 3.1% 상승을 보이는 등 지난 해보다 높은 인상을 보이고 있다.

체코 재무부는 200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8%로 전망하고 있다.

다. 대외 부문

2004년에는 EU 가입에 따른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체코 생산품의 경쟁력 향상 및 외자 기업의 증가 영향으로 대외 교역이 활황을 보였다. 2004년에 수출은 미화 기준 37.9%가 증가하고 수입은 33.2%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2003년의 25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10억 달러로 개선되었다.

2005년에는 수출이 미화 기준 16.4% 증가하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동 기간 중 12.1%에 증가에 그쳐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였다.

2006년에도 크라운화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체코 산 제품의 경쟁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를 보이는 등 금년에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체코 국영 기업의 민영화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치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의 증가는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이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증가가 다시 체코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선 순환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체코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영 통신회사인 Cesky Telecom 등의 매각에 따른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5년에 미화기준으로는 사상최대, 현지화 기준으로는 2002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다.

라. 환율

체코 크라운화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지속 유입과 체코의 EU 회원국 가입에 따라 2004년 이래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 월평균 환율 기준 2005년 1월에 EUR1=30.310였던 환율이 12월에는 EUR1=28.975로 강세를 나타내었다.

체코 국영 통신 회사(Cesky Telecom)의 민영화 등 외국인 투자의 지속 유입의 영향으로 2005년 2월에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 유로 당 30 크라운 선이 무너지고 2005년 12월 들어 29 크라운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06년 12월에는 28 크라운 선이 붕괴되는 등 크라운화의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체코 재무부, EIU, IMF, OECD 자료 종합(2006년 12월 최신 자료))

9. 주요 산업 동향

가. 건설업

체코의 건설업은 자유화 이후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새로운 민간기업들의 등장으로 빠르게 민영화가 추진되어 1996년까지 건설업체의 99% 이상이 민영화되었다.

체코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자유화 이후 아파트 공급을 주도하던 대기업들의 몰락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건설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후반의 약 50%에서 2004년에는 4.3%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공장건설의 증가와 도로건설 등으로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건설업 매출이 2001년에 9.6%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2.5% 증가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2002년도 대규모 홍수에 따른 보수공사의 증가로 8.9%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2004년에는 프라하 국제공항 확장 공사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활기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는 호경기를 보였다.

2005년 상반기에는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매출이 4.2%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 3/4 분기에 7.3%, 4/4 분기 9.7% 성장을 보이는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장건설 증가 영향으로 다시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었다.

체코의 건설 경기는 EU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건설도 활기를 띠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05년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28.3% 증가하고 공장건설이 16.4%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6년에도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과 주택 및 공장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7월까지 건설업 매출이 월 평균 5.5% 증가를 보이는 등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통계청,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 12월 최신자료)

나. 광업

체코는 매우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석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량에 그치고 있고 경제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광물 광산은 폐쇄된 상태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은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북부 모라비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탄광들은 90년대 들어 과잉인력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1995년까지 소규모

탄광들은 모두 폐광되었으며, 대규모 탄광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1990 년에 186,111 명에 달했던 근로자 수가 2005 년 말에는 5 만 2 천명으로 축소되었다. 2000 년 9 월 Temelin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탄광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영 석탄업체 2 개사의 영업실적은 가스생산으로의 사업다각화와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체코 최대의 갈탄 생산업체인 Severoceske doly(SD)의 정부지분 55.792%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실업률이 높은 동 지역의 실업문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체코 정부는 2005 년 7 월 체코 최대의 전력회사로 동 탄광의 최대 수요업체인 CEZ 에 SD 를 매각하려 했으나 CEZ 도 국영업체이고 이미 동 탄광의 지분 37.3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는 등 계속 지연되고 있다. 체코의 무연탄은 2010 년 까지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갈탄의 경우는 향후 25 년간 채굴이 가능하다.

체코 내 원유 및 가스 생산은 192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46 년 1 월초 Ceskoslovenske naftove zavody(후에 Ceskoslovenske naftove doly 로 이름이 바뀜)사가 설립되어 본사를 Hodonin 에 두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영업대상 지역 및 생산활동 등 기본 활동분야가 변화되었는데 1990 년 4 월 1 일에는 Moravske naftove doly 라는 국영회사가 Hodin 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어 체코 내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을 담당하고 있다. 1992 년 5 월 1 일 동사는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지질학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모라비아 동남부 지역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탐사가 된 지역이기는 하나 첨단 탐사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원유 및 가스 발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파키스탄, 터키, 스페인 및 북해 등 해외에서의 광범위한 탐사활동도 병행 되고 있는데 현재 Moravske naftove doly, a.s. Hodonin 사는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 관련 최대 업체로 비엔나 지대 체코 측 지역 및 Carpathian 지방의 4 년간 독점 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 탐사권을 4년간 추가연장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12 월 최신자료)

다. 석유화학산업

체코 석유화학산업의 부문별 매출은 연료 57.1%, 난방용 유류가 11.5%, 윤활유 및 아스팔트 11.0%, 석유화학 원재료 16.8%, 기타 정유제품 3.6%의 비중을 각각 보이고 있다.

Ceska rafinerska, a.s.의 경우 Litvinov 및 Kralupy 정유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petrol, a.s. 및 Agip Petroli, Du Pont Conoco, Shell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연간 원유 정제 능력은 7.5 백만 톤에 이르고 있다.

Paramo, a.s. Pardubice 사는 1994 년 1 월 1 일부로 설립된 회사로 연간 1 백만 톤의 원유 정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Koramo, a.s. Kolin 사는 1994 년 7 월 1 일 설립된 회사로 원유를 직접 정제하지는 않고 석유화학 반제품을 윤활유, 난방용 유류, 그리스 및 바셀린 등으로 가공하고 있다.

Ostramo-Vlcek and comp. s.r.o. Ostrava 사는 순수 민간 회사로 이전에 국영 기업이었던 Ostramo 사가 1992년 1차 민영화 당시 Vlcek 씨에게 직접 매각된 바 있으며 현재 다수 지분은 INTECO s.r.o.사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 1997년 체코를 휩쓴 대홍수로 생산설비가 폐허화 되어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Vialit International. Ltd.사 또한 순수 민간회사로 체코 정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Vialit 사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스팔트를 구매하여 아스팔트 제품 및 역청 혼합물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12월 최신자료)

라. 에너지산업

체코의 주요 국내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전체 기초에너지 공급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석탄 채굴량을 기준으로 체코의 무연탄 매장량은 2010년 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탄의 경우 향후 25년 정도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 말기 동안 체코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련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1995년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Ingolstadt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체코에 대한 유일한 석유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1997년 5월 노르웨이와의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체코 천연가스 수요량의 20% 이상을 노르웨이로부터 공급 받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원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은 종전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다.

2005년 기준 체코의 전력생산량은 82.6백만 MWh 이 중 66%가 화력발전이며, 나머지가 원자력 및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전통적인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와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환경문제 때문에 중·동구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원자력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1989년 이후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소요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의 문제로 1983년에 시작한 남부 보헤미아 지역의 Temelin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00년 9월에야 비로서 1기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2기 원자로가 2003년에 발전을 시작하였다. 체코에는 Temelin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Dukovany 원자력 발전소가 각각 440MW 규모의 4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체코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8개 전력 공급업체와 고압 송전선망과 함께 체코 전력공사(CEZ)의 정부지분 67.61% 매각을 위한 2002년 12월 국제입찰이 실패함에 따라 체코 정부가 2002년 3월 동 매각계획을 취소하였으며, 현재 전체지분의 16%를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 체코 전력생산의 72%를 장악하고 있는 CEZ는 2003년에 체코 내 8개 전력 공급업체 중 5개사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전력부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하였는데, 동사는 중부유럽 최대의 전력회사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체코의 전력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 중으로 현재 연간 9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수요자의 경우 전력공급회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공급 회사를 자유로 선택하도록 완전 자유화되었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체코 가스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가스회사인 Transgas 가 2001 년에 독일의 RWE 사에 매각되어 RWE Transgas 가 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2005 년부터 대기업들은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2006 년 말까지는 천연가스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자료원 : 체코 통계청 및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12 월 최신자료)

마. 의류·섬유산업

체코의 의류·섬유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수출지향적 특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체제 전환 이후 의류 및 섬유류 부문의 무역 흑자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오다가 중국산 등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가 영향으로 2004 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체코의 의류·섬유산업은 중국산 등의 시장진출 증가와 원료가격 상승, 크라운화의 강제 등 영향으로 2006 년 상반기에만 체코산 의류 매출이 1/6 이 감소하고 섬유류 매출도 4%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도 2006 년 6 월말 현재 6 만 3 천명으로 2005 년 말에 비하여 6% 감소를 나타내었다.

현재 체코 의류·섬유산업에는 750 개사가 있는데 2006 년 들어서만 Tepna Nachod, Alma Nova Bystice 등이 문을 닫았으며, 체코 최대의 섬유원단 생산업체인 Tiba 사도 부도에 직면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섬유산업 부문별 전망을 살펴 보면 먼저 섬유류 생산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원사류 부문의 경우 노후화된 생산설비들이 많아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며, 방적 공장들의 생산 능력 역시 상당한 수준이지만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가 요구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12 월 최신자료)

바. 제약·의료산업

체코의 제약 및 의료 산업은 체코 제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 이후 초기 수년간은 매출이 계속 감소되어 1994 년에는 1990 년 당시의 90% 수준까지 떨어져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저조한 국내 수요 및 의약 산업의 무역 상황 변화 그리고 서구 시장 지향 증가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6 년 이후 생산 및 매출이 점차 증가 추세로 회복되어 증가율이 전체 제조업 증가율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1997 년에는 의약산업 부문이 매출액 기준으로 금속산업, 식품산업, 운송 엔지니어링 산업 및 기타 엔지니어링 산업에 이어 5 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 부문의 특징으로 Unipetrol, CHZ Sokolov 및 Spolana Neratovice 등 일부 전략 업체들의

경우 아직도 체코 정부가 34% 이상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중간규모의 업체들이 동 분야의 매출 및 부가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업원 1 천명 이상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61.3%에 비해 종업원 250 명 이상 1 천명 미만의 중간규모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2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부 보헤미아의 Ustinad Labem 및 수도 프라하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매출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화학산업 비중이 낮은 Jihlava, Hradec Kralove 및 Plzen 등지가 꼽히고 있다. 체코 국내 소비는 매년 10-2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코 국내 업체들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수입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12 월 최신자료)

사. 철강·금속산업

철강·금속 산업은 Nova Hut 이 2003 년에 Mittal Steel 에 매각된 데 이어 2005 년 11 월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Evraz Group 이 Vitkovice Steel 의 정부지분 98.96%를 인수함으로써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현재 160 여 업체들이 철강 및 금속산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영 기업이었던 금속부산물 가공업체 Kovosrot 의 민영화에 따라 스크랩 취급 업체들 모두 치열한 경쟁 상태를 겪고 있는데 초기에는 금속부산물 구매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나 지금은 후 판매 및 마케팅 부문에까지 경쟁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체코 내 선철 생산은 철광석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체코의 철강 생산량은 2003 년에 678.3 만 톤이었으며 2004 년에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703.2 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05 년에는 618.9 만 톤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체코의 철강산업이 2006 년에는 국제수요의 회복으로 지난 해 부진에서 벗어나 최고조에 달했던 2004 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규 EU 국들의 철강 생산량은 2010 년까지 200 만 ~ 300 만 톤 더 늘어난 2,500 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4 개국들의 철강 생산량은 EU 전체 철강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내철강 수요는 1,500 만 톤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EU 의 철강산업은 이전의 종업원 90 만 명에서 현재는 26 만 명까지 대폭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왔기 때문에 체코에서도 현재 2 만 8 천명 가량의 철강산업 종사자들 중 약 6 천명이 2010 년까지는 산업현장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체코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기존 EU 15 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체코 최대의 철강 생산업체는 국내 철강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Mittal Steel Ostrava (종전의 Ispat Nova hut)로 동사는 2004 년에 약 320 만 톤의 철강을 생산한 데 이어 2005 년에는 266 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2006 년에는 2004 년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리고 Moravia Steel Group 의 Trinecke zelezarny 사가 동년에 243 만 톤을 생산 하여 전체 생산량의 1/3 을 차지하면서, Vitkovice Steel 사는 2006 년에도 연간 95 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 12 월 최신자료)

아. 기계산업

체코 기계산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상당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또한 대단히 높는데 1990년 이후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시장 개방 및 경쟁 격화에 따라 생산기반의 구조조정이 대폭 이루어져 왔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기계류의 수요 감소는 일반 기계류 자체가 투자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기계류의 수요도 차츰 되살아 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체코의 기계류 산업은 1천 개 이상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종업원 49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업체수로는 48개 정도에 불과하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6%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12월 최신자료)

자. 수송기기산업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1905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세계 3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코다 자동차가 말해주듯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오토바이 및 철도 차량 생산이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발달에 힘입어 1920년 이후 항공기 제작 산업에도 부수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945년 이후 운송장비 생산은 체코 제조업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스코다 이외에도 SKODA Plzen, TATRA Koprivnice, AVIA Prague, AERO Prague, PRAGA Prague, MSV Studenka, Vagonka Ceska Lipa, CZ Strakonice, LET Kunovice, MORAVAN Otrokovice 및 많은 다른 업체들의 생산 제품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런 운송 장비 부문은 생산규모, 매출 및 수출 모두에 있어 체코 제조업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체코에서 생산된 운송 장비들은 거의 세계 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차, 디젤 엔진 그리고 제트기 조종 훈련기계 등은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코에서 생산되어 공급된 물량을 보면 2륜 및 4륜 자동차가 14백만대, 1만 2천대 이상의 트롤리 버스, 3만 7천대 이상의 레저, 운송 및 군용 비행기와 글라이더, 2만 2천대 이상의 기관차, 25만대 이상의 철도차량 그리고 2만 3천대 이상의 전차 등으로 특히 전차(tram)는 현재 전세계에서 운행 중인 4대중 1대가 체코산일 정도로 많이 공급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업체인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991년 4월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정부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 동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업체의 민영화도 마무리되어 체코 운송산업에 투자된 외국 자본은 거의 150억 크라운(미화 약 428백만 불)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인 144억 크라운이 자동차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외국 업체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SKODA Mlada Boleslav VW Group(독일), KAROSA Vysoke Myto Renault V.I.(프랑스), AVIA Prague Daewoo(한국), AUTOPAL Novy Jicin CCD Ford(미국), ROCKWELL LVS Liberec Rockwell(미국),

BSS Metaco (프랑스), MOTORPAL Jihlava Bosch-Joint venture-(독일), MOTOR JIKOV Ceske Budcovice-Joint venture-(독일), AKUMA Mlada Boleslav Caminor hold(스위스), TRW(미국), VAGONKA Ceska Lipa DWA Berlin(독일) 등이 있으며 이외에 자동차 타이어 생산업체인 Barum Continental 또한 독일 Continental 타이어에서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체코 내 관련 업체들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 능력은 기술개발, 제품 혁신 및 생산 설비 현대화 투자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체코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또한 특히 초기 단계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스코다 자동차의 파비아 및 옥타비아 모델, 카로사 버스 그리고 많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의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송 장비 산업은 단일 부문으로 체코 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스코다 자동차 1 개사가 체코 전체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체코 내 운송장비 판매 또한 매년 30%이상의 신장률을 보일 정도로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운송장비 생산 부문은 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많지 않은 산업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스코다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유럽에서도 가장 현대적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만들어 유럽 시장에서 스코다 자동차가 호평을 받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트럭 생산은 부진을 보여 대형 트럭 생산업체인 Tatra 및 Liaz 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모델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생산 설비 기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2 년 4 월 기공식을 가진 도요타와 PSA Peugeot Citroen 이 합작한 TPCA 가 2005 년 3 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2006 년부터는 30 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체코투자를 결정하여 2006 년 12 월 10 일 공장건설을 시작으로 2008 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 등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내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자료원 :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6. 12 월 최신자료)

10. 정보조사 자료원

정보원	홈페이지
체코 통계청	http://www.czso.cz
체코 재무부	http://www.mfcr.cz
체코 산업무역부	http://www.mpo.cz
체코 중앙은행	http://www.cnb.cz
CzechInvest	http://www.czechinvest.org
CzechTrade	http://www.czechtradeoffices.com
EIU	http://www.eiu.com
Eurostat	http://epp.eurostat.cec.eu.int
EU 통합관세율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Czech Business Portal	http://www.businessinfo.cz/en/
The Fleet Sheet	http://www.fleet.cz
The Prague Daily Monitor	http://www.praguemonitor.com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US\$십억)	61.8	75.3	91.4	108.2	124.3
실질경제성장률(%)	2.5	1.9	3.6	4.2	6.1
1인당 GDP(US\$)	6,048	7,379	8,955	10,602	12,152
구매력평가기준1인당 GDP(US\$)	15,744	16,907	17,428	18,733	20,417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평균)	4.7	1.8	0.1	2.8	1.9
실업률(%)	8.1	7.3	7.8	8.3	7.9
경상수지(US\$백만)	-3,273	-4,166	-5,690	-6,511	-2,575
수출(US\$백만)	33,378	38,319	48,568	67,027	78,307
수입(US\$백만)	36,446	40,497	51,041	68,056	76,622
무역수지(US\$백만)	-3,068	-2,179	-2,473	-1,029	1,685
외환보유고(US\$십억, 연말)	14.5	23.7	27.0	28.4	29.6
총외채(US\$십억, 연말)	22.4	27.0	34.9	45.2	45.8
연평균환율(US\$:CZK)	38,038	32.736	28.227	25.701	23.947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중앙은행, IMF, UNECE(2006. 12월 최신자료)

12. 무역통계

가. 체코 무역통계

무역수지

(단위: US\$백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1-10월)
무역수지	-2,231	-2,530	-1,051	1,682	1,900
수출	38,504	48,709	67,194	78,210	77,227
수입	40,735	51,239	68,245	76,528	75,327

자료원: 체코 통계청(2006년 12월 최신자료)

주요 국별 수출

(단위: US\$백만, %)

국명	2003	2004	2005		2006(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독일	18,021	24,282	26,201	7.9	24,696	11.9
슬로바키아	3,884	5,692	6,733	18.3	6,416	16.8
폴란드	2,335	3,532	4,266	20.8	4,372	24.7
프랑스	2,304	3,105	4,139	33.6	4,294	37.6
오스트리아	3,043	4,036	4,303	6.6	4,014	8.3
영국	2,620	3,155	3,634	15.2	3,686	20.9
이태리	2,158	2,908	3,322	14.2	3,560	31.8
네덜란드	2,010	2,886	2,841	-1.6	2,787	22.1
헝가리	1,110	1,826	2,086	14.2	2,250	31.1
벨기에	1,091	1,731	2,077	20.0	2,249	32.6
스페인	1,024	1,483	1,990	34.1	2,052	24.7
미국	1,191	1,520	2,075	36.5	1,812	7.4
일본	162	229	328	43.5	326	24.1
중국	243	272	298	9.9	311	29.4
한국	38	58	97	68.0	99	23.6
계	48,709	67,194	78,210	16.4	77,227	19.7

자료원 : 체코 통계청(2006년 12월 최신자료)

주요 국별 수입

(단위: US\$백만, %)

국명	2003	2004	2005		2006(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독일	16,687	21,605	22,965	6.3	21,500	12.3
러시아	2,339	2,771	4,360	57.4	4,680	32.3
폴란드	2,130	3,246	3,789	16.7	4,329	40.5
중국	2,681	3,547	3,924	10.6	4,380	43.6
슬로바키아	2,656	3,667	4,155	13.3	4,032	17.4
프랑스	2,525	3,234	3,469	7.3	3,593	25.1
이태리	2,725	3,627	3,636	0.2	3,514	15.5
네덜란드	1,122	1,910	3,080	61.3	2,873	17.6
오스트리아	2,197	2,731	3,038	11.2	2,765	9.6
일본	1,168	2,307	2,440	4.0	2,268	14.0
영국	1,389	1,979	1,912	-3.4	1,890	24.4
미국	1,594	2,119	1,986	-6.3	1,750	9.6
헝가리	1,043	1,433	1,676	16.9	1,735	28.7
벨기에	1,046	1,339	1,507	12.6	1,483	18.1
한국	377	562	590	4.9	569	24.3
계	51,239	68,245	76,528	12.1	75,327	20.0

자료원 : 체코 통계청(2006년 12월 최신자료)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백만)

SITC	품목	2003	2004	2005		2006(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78	자동차 및 부품	7,423	10,021	12,737	27.1	13,283	26.2
74	일반 산업용기계	3,278	4,564	5,616	23.1	5,351	21.9
69	금속제품	2,938	4,054	4,596	13.4	4,437	15.7
752	컴퓨터	2,493	3,328	3,922	17.9	4,219	38.1
67	철 강	1,914	3,085	3,689	19.6	3,597	17.1
72	특수 산업용기계	1,630	2,111	2,452	16.2	2,366	16.6
71	원동기기 및 설비	1,535	1,964	2,187	11.4	2,282	14.3
772	전기회로기기	1,381	1,897	2,069	9.0	1,994	15.6
65	섬유류	1,649	1,937	2,068	6.8	1,853	6.3
778	기타 전기기기	1,499	2,035	1,917	-5.8	1,803	13.5
773	기타 배전용 장비	1,050	1,581	1,765	11.6	1,798	22.0
62	고무제품	1,132	1,589	1,768	11.3	1,726	14.6
82	가구 및 부품	1,270	1,598	1,939	21.3	1,666	6.5
761	TV	332	1,017	1,207	18.6	1,461	54.9
664,5	유리 및 유리제품	1,180	1,431	1,580	10.4	1,358	2.0
총 계		48,709	67,194	78,210	16.4	77,227	19.7

자료원 : 체코통계청(2006년 12월 최신자료)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SITC	품목	2003	2004	2005		2006(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78	자동차 및 부품	4,467	6,098	6,530	7.1	6,432	19.9
67	철강	1,945	3,264	4,044	23.9	4,029	19.1
74	일반 산업용기계	3,028	3,947	4,074	3.2	3,890	12.8
69	금속제품	2,266	3,026	3,343	10.5	3,267	18.1
333	원유	1,290	1,643	2,837	72.7	3,106	36.8
68	비철금속	1,178	1,640	1,856	13.2	2,407	58.0
71	원동기기 및 설비	1,413	1,718	2,149	25.1	2,272	28.0
34	가스	1,324	1,303	2,082	59.8	2,259	40.7
764	기타 통신장비	1,229	1,796	1,905	6.1	2,202	47.2
772	전기회로기기	1,551	2,059	2,201	6.9	2,177	20.0
759	컴퓨터 부품	1,766	2,009	1,587	24.1	2,128	73.3
752	컴퓨터	1,766	2,009	1,847	-8.0	2,086	52.1
72	특수 산업용기계	1,662	2,090	2,095	0.2	1,926	7.9
65	섬유류	1,636	1,948	2,044	5.0	1,855	9.4
54	의약품	1,454	1,866	2,053	10.0	1,828	7.1
총 계		51,239	68,245	76,528	12.1	75,327	20.0

자료원 : 체코통계청(2006년 12월 최신자료)

나.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연도별 수출입

(단위: US\$ 천, %)

연 도	한국의 수출		한국의 수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3	56,698	-	25,665	-	31,033
1994	89,794	58.4	49,729	93.8	40,065
1995	131,742	46.7	48,800	-1.9	82,942
1996	187,662	42.5	59,277	21.5	128,385
1997	175,226	-6.6	55,676	-6.1	119,550
1998	105,839	-39.6	29,481	-47.0	76,358
1999	91,765	-13.3	61,582	108.9	30,183
2000	65,665	-28.4	126,884	106.0	-61,219
2001	72,869	11.0	98,728	-22.2	-25,859
2002	108,844	49.4	100,238	1.5	8,606
2003	157,627	44.8	104,623	4.4	53,004
2004	312,952	98.5	108,257	3.5	204,695
2005	338,791	8.3	149,867	38.4	188,924
2006.1-11 월	509,615	63.2	233,496	76.2	276,119

자료원: KOTIS(2006년 12월 최신자료)

대 체코 주요 수출 상품

(단위: US\$ 천, %)

MTI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1-11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 계	157,627	312,952	338,791	8.3	509,615	63.2
741	자동차	73,408	103,478	118,435	14.5	171,276	57.2
813	컴퓨터	12,260	62,377	62,176	-0.3	94,103	62.9
753	금형	370	41	1,245	2,964.2	36,861	6,100.7
812	무선통신기기	17,930	46,206	65,933	42.7	36,647	-40.5
790	기타기계류	448	469	1,012	115.9	35,254	3,392.5
831	반도체	1,325	3,402	15,272	348.9	21,874	50.6
723	금속공작기계	117	1,030	242	-76.5	20,530	9,596.1
811	유선통신기기	434	11,613	10,995	-5.3	8,000	-13.4
742	자동차부품	1,920	1,044	886	-15.1	7,148	856.4
214	합성수지	9,410	6,535	7,428	13.7	7,094	5.6
726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1	1	956	152,566	5,715	521.9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09	330	1,181	257.3	5,529	376.4
815	계측제어분석기	556	806	1,013	25.7	4,070	348.2
729	기타산업기계	1,431	4,306	4,992	15.9	3,830	-18.0
320	고무제품	1,085	1,555	2,573	65.5	3,517	61.9

자료원: KOTIS(2006년 12월 최신자료)

대 체코 주요 수입 상품

(단위: US\$ 천, %)

MTI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1-11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 계	104,623	108,257	149,867	38.4	233,496	76.2
742	자동차부품	22,821	8,963	21,185	136.4	94,143	531.2
751	기계요소	2,789	10,277	30,952	201.2	31,944	11.0
573	유리공업제품	26,330	28,225	33,346	18.2	22,389	-24.0
833	수동부품	17,105	11,827	8,811	-25.5	11,202	34.1
813	컴퓨터	566	1,039	1,954	88.2	6,292	337.6
841	회전기기	2,201	2,294	4,663	103.3	6,148	49.1
614	철강관 및 철강선	725	3,369	5,714	69.6	5,359	-3.9
711	원동기 및 펌프	1,256	1,056	1,094	3.3	4,699	350.3
814	전자응용기기	532	2,002	2,430	21.3	3,796	98.0
824	가정용 회전기기	469	2,291	2,764	20.7	3,136	13.7
834	기구부품	288	282	878	211.7	2,682	239.4
752	공구	773	2,815	2,575	-8.5	2,445	10.1
290	기타 화학공업제품	1,065	1,001	1,778	77.6	2,411	38.6
613	철강판	516	1,269	550	-56.7	2,381	340.7
721	섬유 및 화학기계	289	1,067	344	-67.8	2,233	565.6

자료원: KOTIS(2006년 12월 최신자료)

13. 투자통계

가. 체코 투자통계

투자 수지

(단위: US\$ 백만)

	2002	2003	2004	2005	2006.9월말
대외투자	52,417.7	59,923.8	69,274.9	74,180.9	81,779.8
- 직접투자	1,473.0	2,283.5	3,759.8	4,239.3	5,616.5
- 간접투자	9,102.8	13,408.0	16,643.7	17,435.2	21,649.2
- 파생금융상품	1,035.6	940.6	1,774.9	1,682.2	1,646.0
- 기타투자	17,098.2	16,336.3	18,648.4	21,269.0	22,103.1
- 외환보유고	23,708.9	26,955.4	28,448.1	29,555.2	30,764.9
투자 유입	65,597.6	80,485.3	106,162.7	109,025.0	124,918.3
- 직접투자	38,669.2	45,286.7	57,258.9	59,458.9	70,062.7
- 간접투자	6,672.6	8,716.8	17,036.4	17,805.7	19,360.1
- 파생금융상품	752.2	758.1	1,422.2	1,247.5	1,108.7
- 기타투자	19,503.6	25,723.7	30,445.2	30,512.9	34,386.8
투자 수지	-13,179.9	-20,561.5	-36,887.8	-34,844.1	-43,138.5

주 1: 연도 말 기준임

주 2: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1) 대외 직접투자

국 별

(단위: US\$ 백만)

국 명	2002	2003	2004	2005	2005년 말 누계
슬로바키아	151.1	-63.1	86.6	58.7	893.9
네덜란드	26.6	116.3	2.5	97.3	528.4
사이프러스	-0.6	-0.9	53.5	13.7	441.8
불가리아	2.7	-3.6	382.5	-7.5	306.8
리히텐스테인	3.0	6.8	45.8	10.2	237.3
루마니아	1.3	1.9	5.7	199.9	210.5
룩셈부르크	-0.2	103.3	2.6	-2.0	203.2
러시아	1.1	-5.4	47.8	0.1	137.0
영 국	2.3	48.2	13.3	28.6	113.8
슬로베니아	65.4	-0.3	-5.5	-3.1	106.5
총 계	206.5	206.0	1,014.3	856.1	4,239.3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산업별

(단위: US\$ 백만)

업 종	2002	2003	2004	2005
농림어업	0.0	0.0	0.1	0.0
광 업	1.1	35.4	22.0	14.3
제 조 업	-29.9	36.6	188.8	453.1
- 화학	27.8	-14.6	53.9	14.3
- 금속제품	-0.9	-0.9	8.1	410.8
- 기타비금속광물	-27.9	2.1	136.2	5.1
- 식품	6.4	14.0	-20.8	18.8
- 목재.출판	-6.1	1.8	7.6	3.2
전기.가스.수도	2.7	0.0	384.3	178.4
무역.수리업	33.2	-24.5	50.5	3.2
운송.통신	-5.9	0.2	92.9	-0.9
건 설 업	0.2	1.9	10.5	5.1
호텔.요식업	0.0	0.0	-1.0	0.0
금 융 업	175.8	191.9	103.7	36.1
부동산업	3.5	-35.1	159.5	161.8
기타서비스업	25.7	-0.5	2.8	5.1
총 계	206.5	206.0	1,014.3	856.1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2) 체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국 별

(단위 : US\$ 백만)

국 명	2002	2003	2004	2005	2005년 말 누계
네덜란드	1,229	-1,056	2,002	1,985	20,630
독 일	4,652	163	758	1,115	12,898
오스트리아	762	484	439	459	6,891
스페인	28	57	68	4,912	5,279
프랑스	142	680	-176	220	3,984
미 국	189	154	505	107	3,111
벨기에	437	-253	-52	185	2,337
영 국	-220	636	19	231	2,337
스위스	271	136	184	258	1,748
일 본	116	328	39	138	981
대 만	-1	-2	-2	3	41
한 국	-	5.5	-0.4	10.3	28.9
총 계	8,483	2,101	4,974	10,991	59,459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산업별

(단위 : US\$ 백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제 조 업	1,001	2,615	1,012	1,848
- 기계/장비	327	1,651	-39	300
- 기초 금속/금속제품	201	659	505	642
- 정유.화학	255	88	266	496
- 식품/담배	79	104	8	157
- 비금속광물 제품	73	87	1	76
- 기타 제조업	66	26	271	177
금 용 업	1,481	891	764	1,302
무역/호텔/식당	251	654	739	574
운송/통신	4,395	-2,911	270	4,962
부동산	372	440	1,644	1,942
전기/가스/수도	384	249	290	147
기 타	599	163	255	216
총 계	8,483	2,101	4,974	10,991

자료원 : 체코중앙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나. 우리나라와 투자교류통계

우리나라의 대체코 직접투자

(단위: US\$ 천, 건)

연 도	신 고		투 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3	1	1,000	1	1,000
1994	3	10,230	2	3,040
1995	-	-	1	304
1996	-	-	-	5,600
1998	1	28,500	1	28,500
2003	1	5,470	1	5,470
2005	2	10,600	2	10,100
2006(1-9월)	5	997,726	4	90,797
누 계	13	1,053,526	12	144,81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 체코의 대 한국 투자 : 없음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체코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기는 하나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며 여름이 무덥지 않다.

연평균 기온은 9-10 도 정도이며 여름 최고 기온은 32-35 도,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20 도 정도이다. 여름은 6 월부터 8 월까지 평균기온 18 도 정도이며 겨울은 12 월부터 1 월까지 이고 평균기온은 영하 3 도 정도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495mm 로 강우일은 월 5-9 일 정도이며, 특히 가을철(10-11 월)에는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주요도시 연평균 기후

	Praha	Brno
연평균 기온(℃)	10.3	9.4
- 최고온도	33.5	32.5
- 최저온도	-17.2	-15.1
연평균 강우량(mm)	399.2	451.2
강우일(일)	123	131
강설일(일)	30	26

주 : 2004년도 기준임

자료원 : 체코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2005"

2. 시차/근무시간

가. 한국과의 시차

한국이 체코보다 8 시간이 빠르며 3 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부터 10 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까지 실시되는 유럽지역 Summer Time 기간 중에는 7 시간이 빠르다. 즉 체코의 오전 9 시는 같은 날 한국의 오후 5 시(Summer Time 기간 중에는 오후 4 시)가 된다. Summer Time 은 전 유럽이 동시에 실시하며 체코는 독일, 프랑스 등 서구 대륙지역 주요 국가들과 동일 시간대이다.

나. 근무시간

일반회사	08:00 - 16:30	토.일 휴무
은행	09:00 - 17:00	토.일 휴무
식품점	07:30 - 18:00	토요일 오전 개업
일반상점	09:00 - 19:00	토요일 17:00까지 개점
슈퍼마켓	09:00 - 20:00	일부는 일요일도 개점
하이퍼마켓	09:00 - 21:00	일요일도 개점
무역관	08:30 - 17:30	토.일 휴무

주: 상기한 근무시간은 직종별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며, 제조업체의 경우 오전 6 시 또는 7 시에 시작하여 오후 2 시 또는 3 시에 문을 닫는 곳도 많다. 또한 TESCO 등 일부 하이퍼마켓들의 경우 24 시간 연중 오픈 하고 있다.

3. 도량형

가. 도량형

길이의 경우 미터(m), 무게의 경우 그램(g)의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전기규격

일반가정의 경우 50 Hz, 220V 로 2 Round Plug 형태(3 Round Plug 의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임)가 사용되며, 공업용으로는 50 Hz, 220V 와 380V 가 사용된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취득

'94.10.6 일 양국간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객(90 일 미만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 3 국에서 입국목적에 상응하는 장기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취업을 위한 장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할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노동 사무소(Labor Office)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장기비자의 관련 규정 내용 및 실제 시행여부 등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체코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체류자는 출생 증명서, 무범죄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경찰서에 매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했으나, “외국인 거류법(Act on the Stay of Foreigners)”의 개정으로 2005년 11월 24일부터 장기비자의 유효기간이 2년 까지 연장되었다.

< 비자 발급처 >

○ 주한체코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1
- 전화 : (02) 725-6765/6
- 팩스 : (02) 725-6452
- E-mail : seoul@embassy.mzv.cz
- Homepage : www.mzv.cz/seoul
- 영사 업무시간 : 월, 수, 금 09:30 - 11:30
- 비자발급 소요기간 : 2-4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3매, 여권사본, 본인명의 은행잔고증명서와 신용카드 사본, 거주목적 입증서류(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취업의 경우 노동허가서 등), 거주지 입증서류(체코 주택 임대서류 등), 신원조회서, 해외여행자 보험증

나. 방역

방역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염병 발생시 단기적으로 도입하나 규제 정도는 극히 미약하다.

다. 출입국 절차 및 유의 사항

입국 시나 출국 시에 여권만 제시하면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며 일정액(CZK 20 만)이상의 현금 지참 반. 출입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필 하여 문제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국 시 체코 내 체류호텔 예약 여부, 충분한 금액의 여비 지참 여부 그리고 체코 출국 교통편(공항으로의 입국의 경우 귀국 항공권 지참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을 입국 심사관이 요구할 수 있다.

라. 세관 규정

1인 당 포도주 2리터, 술 1리터, 담배 200개비까지는 허용된다.

여행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 CZK 200,000 상당의 외화는 신고 없이 입국 가능 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입국 시 신고만 하면 출국 시 반출에 문제가 없다.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성 물품의 반출 시는 국가 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된다.

마. 공항-시내 교통편

프라하 국제공항(Ruzyne Airport)는 시내중심으로부터 20Km 거리에 있으며 버스-지하철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 중심에 진입할 수 있다.

1) 공항택시(Airport Car)

터미널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공항택시를 이용할 경우 도심까지 약 30-50 분 소요된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며 도심까지 보통 약 CZK 800 정도 소요된다.

2) 버스-지하철 이용 시

터미널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119 번 버스를 타고 종점(Dejvicka)에서 내려 지하철 A 선으로 갈아타고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시간은 약 40-60 분 소요된다. 요금은 CZK 20 의 승차권을 구입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버스 승차 시 노란색 무인 계찰기에 승차권을 찍으며, 지하철로 환승 할 때는 동 승차권을 가지고 그냥 승차하면 된다.

5. 환율/환전

가. 환전

주말이나 은행 개점 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호텔이나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되 환전소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몇 군데를 둘러보고 환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좋게 고시해두고 대신 고율의 커미션(4-5%)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체코 크라운화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 길거리에서 환전을 권유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근래에 새로이 등장한 사기 수법으로 한 사람이 접근해서 환전을 하라고 권유하면 환전 여부에 관계없이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불법 환전을 했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물론 환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기꾼이므로 절대로 여권이나 지갑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계속 보여 달라고 우기면 지나가는 경찰차 혹은 정복 경찰을 불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것이 좋다.

나. 신용 카드 사용

신용 카드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호텔, 레스토랑, 선물 가게 등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일부 식당 등 통용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체코 크라운화의 연도별 평균 환율

연 도	평 균 환 율
1991년	US\$1 = Kc29.487
2000년	US\$1 = Kc38.590 EUR 1 = Kc35.610
2001년	US\$1 = Kc38.038 EUR 1 = Kc34.080
2002년	US\$1 = Kc32.736 EUR 1 = Kc30.812
2003년	US\$1 = Kc28.227 EUR 1 = Kc31.844
2004년	US\$1 = Kc25.701 EUR 1 = Kc31.904
2005년	US\$1 = Kc23.947 EUR 1 = Kc29.784
2006년(12.28일 기준)	US\$1 = Kc20.902 EUR 1 = Kc27.535

자료원: 체코 중앙 은행(2006. 12 월 최신자료)

6. 물가정보

□ 도시 : 프라하(체코)			- 환율 : US\$1 = CZK23.8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529	7.1	구두(1켤레, 소가족)	84
1.2	넥타이(1개, 실크100%)	25	7.2	치약(150g, 1개)	0.7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52.9	7.3	칫솔(1개)	2.6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4.6	7.4	면도기(1세트)	9.1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850	7.5	건전지(1세트, 1.5V AA)	2.7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6.5	7.6	화장지(1통, 300매)	8.3
1.7	청바지(Levi's)	108.7	7.7	비누(1개)	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1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6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4	8.2	볼펜(12개)	3.8
2.3	닭고기(1KG, 생닭)	1.89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0.8
2.4	쌀(1KG, Short Grain)	1.3	8.4	공CD(1통, 12개입, 700MB)	5
2.5	밀가루(1KG)	0.2	8.5	휴대폰(범용형)	125
2.6	설탕(1KG, 백설탕)	0.75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4.7
2.7	계란(10개)	1.04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75.4
2.8	감자(1KG, 현지산)	0.1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5
2.9	미네랄워터(1.5 l, Evian 1Pet)	0.42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8,465.35
3.1	고추장(1Kg)	11	9.2	엔진오일(1L)	12
3.2	된장(1Kg)	7	9.3	휘발유(1L)	1.3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42
3.4	설렁탕류 (1인분, 설렁탕, 곰탕등)	1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049
3.5	불고기(1인분, 200g)	15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6	10.1	지하철(1구간)	0.83

3.7	김치찌개(1인분)	13	10.2	시내버스(1구간)	0.83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04
4.1	햄버거(1개)	4.2	10.4	택시(추가요금/Km)	1.04
4.2	피자(1판)	8.4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1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1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3.8
4.5	담배(수입산, 1갑)	2.4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
4.6	위스키(1병, 750ml)	23.1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16
4.7	커피(1병, 175g)	7.3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1.43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26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05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6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8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41
6.1	TV(29인치, 칼라, 범용)	541			
6.2	VTR(6헤드, 범용)	150.7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04.5			
6.4	전자레인지	108.7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888.5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616			

□ 도시 : 프라하(체코)			- 환율 : US\$1 = CZK23.8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5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301.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1,175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200~5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2.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7,136.38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2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8,33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28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9,827.9	18.6	연간국경일	1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61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3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9,235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13.3	골프공(1타)	23.5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500	19.1	법정최저자금	8,395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7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84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6.63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26%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15~ 32%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월급의 9%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0.5~1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무료			
14.4	치과(스켈링, 1회)	42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9.4			
15.2	한국신문(1개월)	56.7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33.6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0.66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3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01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78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5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7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9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26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839.5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2004.5.15부터 대한항공이 인천과 프라하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겨울에는 주 3회(월, 목, 토) 운항하고 있으며, 2007년 4월부터는 주 4회(화, 목, 토, 일)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서유럽을 경유하여 입국할 수도 있다.

나. 교통편 이용

프라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편리하며,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1) 택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시내 중심가에서 손님을 대기 중인 택시는 거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므로 가능한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 할 경우 목적지를 이야기 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콜택시로 가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최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직접 이용 가능한 콜택시는 AAA(☎14014)가 있다. 전화로 14014 를 호출하면 콜택시 안내원이 나오며 거의 대부분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 전화 시 사전에 반드시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거리명 및 번지수 혹은 호텔명 등) 공중전화로도 이용 가능하다.

2) 지하철

지하철은 모두 세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차와 시내 버스를 동일한 표로 자유롭게 환승 가능하다.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은 14 크라운 및 20 크라운 두 가지로 14 크라운 짜리는 환승이 불가능하며 개찰기에 찍힌 시간으로부터 20 분 혹은 탑승 정거장으로부터 5 정거장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20 크라운 짜리는 75 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환승 가능하다.

차표는 지하철역 구내의 무인판매기나 시내의 신문판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차표는 지하철의 경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입구의 노란색 무인 개찰기에서 차표를 펀칭 (Punching)한 후 목적지 도착역을 벗어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전차나 버스의 경우 탑승구 옆에 있는 노란색 개찰기를 이용하면 된다.

무임승차의 경우 티켓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특히, 동양인)들의 경우 중점 단속 대상이므로 반드시 표를 구입한 후 승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전철(Tram), 버스

시내 중심가는 대부분 전철이 운행되며 전철 구간과 연계되는 버스는 주로 외곽 지역을 운행한다. 전철과 버스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차표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버스 내에서도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금은 25 크라운이다.

4) 승차권 유형 및 가격

1회용 일반 승차권

(단위: Kc)

구분	가격(Kc)	유효기간
성인용	20	75분(환승 가능), 주말 90분
	14	20분(환승 불가), 지하철 5정거장(30분 내 환승 가능)
학생(6-15세)	10	75분(환승 가능), 주말 90분
아이(5세까지)	무료	

기간별 승차권

기간	가격(Kc)
1일	80Kc
3일	220Kc
7일	280Kc
15일	320Kc

정기승차권

구분	기간		
	1개월	3개월	1년
일 반	460Kc	1,260Kc	4,150Kc
학 생	230Kc	630Kc	없음

다. 국제전화 사용

체코 국제 전화 사용료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호텔 룸에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 수신자 요금 부담 조건의 콜렉트 콜이 유리하다.

콜렉트콜을 이용할 경우 외부 통화번호(호텔 등 구내전화의 경우) + 0042008201 을 누르면 서울 국제 전화국 교환원이 직접 연결되며 데이콤 국제 전화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호텔 룸에서 바로 국제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DDD 이용 시에는 외부통화번호 + 00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순으로 번호를 누르면 된다. 이외에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인데 전화카드는 호텔 프런트, 지하철역, 우체국, 담배 판매대 등지에서 구입 가능하며 공중전화 사용 시에는 00 + 82(한국) + 2(서울의 경우) +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라. 우편

체코에서는 등기, 항공우편, EMS, DHL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항공우편의 경우 체코에서 한국까지 배달에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DHL 등 특사우편의 경우 3 일 정도가 소요된다.

항공우편(10g 까지)을 한국에 부칠 경우 44 크라운 이며, 편지, 소포 및 EMS 발송 시 소요되는 각종 우편요금은 체코우체국 사이트(http://www.cpost.cz/jetspeed/?js_language=e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프라하의 호텔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호텔 요금은 동유럽 최고 수준에 속한다. 세일즈 출장으로 프라하에 방문하는 업체의 경우 프라하 무역관에 사전 요청할 경우 20-3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관광객은 무역관을 통해 예약할 수 없다.

비 시즌인 11 월-3 월에는 인터넷의 호텔할인 예약 사이트(www.a-prague.com, www.hotel-prague.us 등)를 통한 예약이 무역관을 통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는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년 중 4-10 월은 관광시즌으로 호텔예약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급 호텔	Inter-Continental, HILTON Prague, Corinthia Towers, RENAISSANCE, MARRIOT, RADISON SAS, Four Seasons HOTEL 등이 있다. 숙박료는 SINGLE EUR 160, TWIN EUR 230 수준이다.
2급 호텔	HOTEL PRAHA, INTERNATIONAL, DIPLOMAT, EUROPA, PARK HOTEL 등이 있다. 숙박료는 SINGLE EUR 120, TWIN EUR 180 수준이다.
기 타	3급 호텔 및 민박(PRIVATE)시설이 있으며, 3급 호텔 요금은 SINGLE EUR70, TWIN EUR 100 수준이다.

- 프라하 무역관 할인 계약 호텔
 - Diplomat Hotel, Hilton Prague, Marriott, Renaissance 등

나. 식당

1) 사전 참고사항

보헤미아인들은 식사 때 맥주를, 슬로바키아인들과 모라비아인들은 포도주를 주로 즐겨 마신다.

- 주요 체코 메뉴
 - Svicova (스비츠킨바) : 소고기 필레 (허리고기)
 - Veprový rizek (베프조비 지젝) : 얇게 저며 튀긴 돼지고기(돈가스 와 비슷)
 - Gulas (굴라쉬) : 삶은 고기와 걸쭉한 고기국물
 - Palacinky (팔라친끼) :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팬케이크
 - Sopský Salat(속스끼 샐라트) : 믹스드 샐러드

2) 프라하 주요 식당

2000.10.16 일 처음으로 한국식당(Seoul Restaurant)이 프라하에 개업한 이래 현재는 6 개소가 영업 중(서울식당은 폐업) 이다.

□ 한국 식당

- Hanil Restaurant(한일관)
 - 위치 : Slavikova 24, Praha 3 (☎222-715-867)
 - 지하철(Metro A) Jiriho z Podebrad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Korea House(한국관)
 - 위치 : Sokolska 52, Praha 2 (☎224-266-246)
 - 지하철(Metro C) I.P. Pavlova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약 100m)
- Tokyo Restaurant(동경)
 - 위치 : Srbska 347/2, 160 00, Praha 6 (☎233-326-670)
 - 지하철(Metro A) Hradcanska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약 300m)
- MASHHANA(마시하나)
 - 위치 : Badeniho 3, Hradcany, Praha 6 (☎224-324-034)
 - 지하철(Metro A) Hradcanska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약 100m)

- Restaurant Kimchi(김치 레스토랑)
 - 위치 : Nad Hradnim Vodojemem 29, Praha 6 (☎224-315-511)
 - Tram 18, 2, 1번의 Orechovka역에서 도보로 2-3분 거리
- Yami Restaurant(야미)
 - 위치 : Masna 1051/3, Praha 1 (☎222-312-756)
 - 구시가 광장 근처에 위치 (일식 위주)
- KOBA Restaurant (코바)
 - 위치 : Dusni 6, Praha 1 (☎602-362-894)
 - 구시가 광장 근처에 위치
- Man-Na Restaurant(만나)
 - 위치 : U Milosrdnych 10, Praha 1 (☎222-320-101)
 - Intercontinental Hotel 인근에 위치
- Mana Sushi House(마나)
 - 위치 : Slezska 56, Praha 2 (☎222-513-369)
 - 지하철(Metro A) Jiriho z Podebrad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중국 식당

- 香港酒家(Hong Kong) : Letenske Namesty 5, Praha 7 (☎233-376-209)
 - 프라하시내 중국식당들 중 한국 사람 입맛에 가장 근접
- 皇宮酒家(China Restaurant Palace) : Narodni 40, Praha 1 (☎224-494-621)

□ 일본식당

- NAGOYA : Stroupeznickeho 3181/23, Praha 5 (☎251-511-724)
- KATSURA : Hotel Diplomat -2 Floor. Evropska 15, Praha 6 (☎296-559-298)

□ 체코 식당

- Prvni Novomestsky Restauraci Pivovar : Vodickova 20, Praha 1
 - 직접 양조한 맥주 판매하며 돼지 족발 요리가 많이 알려져 있음
- U Kalicha : Na Bojisti 12-14, Praha 2 (☎224-912-557)
 - Svejka의 소설 배경이 된 곳
- U Fleku : Kremencova 9-11, Praha 1 (☎224-934-019)
 - 504년 전통을 가진 곳, 직접 만든 흑맥주가 일품
- U Vejvodu : Jilska 4, Praha 1 (☎224-219-999)
 - Pilsner Urquell 생맥주가 일품

- Restaurace Pelikan : Na Prikope 7, Praha 1 (☎224-210-697)
 - 저녁에는 체코 전통 춤인 폴카를 구경할 수 있음

□ 기타

- Kampa Park : Na Kampe 8b, Mala Strana, Praha 1 (☎257-213-493/4)
 - 찰스다리 옆 블타바 강변에 위치. 음식 수준이 높은 만큼 음식값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강변쪽 테이블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스칸디나비아 요리 전문점이다.
- Restaurante Brasileiro : Na Prikope 22, Praha 1 (☎221-451-200)
 - 브라질 바비큐 식당, 샐러드 바에 스시도 준비되어 있음

9. 관공서 관행

체코의 관공서 일 처리는 규정과 원칙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 처리를 위한 접근 방법, 시스템은 잘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처리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같은 사안에 대해 담당자 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권이 관련된 정책결정, 구매, 입찰 등 분야에는 독일, 미국 등 서방 대기업의 인맥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유럽 등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정치권뿐 아니라 기업 내에도 아직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2006년 7월에 발간한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3 - Who is Succeeding — And Why?” 에 따르면 1/4 이상의 기업이 정부 입찰을 따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있으며, 체코 기업들이 평균 매출액의 0.6%를 뇌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체코는 EU 회원국이 된 지금도 사회적 부조리 제거를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

10. 공휴일

가. 2007년도 공식 공휴일

신정(New Year's Day)	1. 1(월)
부활절(Easter Holiday)	4. 8(일)-4. 9(월)
노동절	5. 1(화)
2차 대전 종전 기념일(Liberation Day)	5. 8(화)
기독교 전파 기념일(Cyril & Methodius Day)	7. 5(목)
얀 후스 순교 기념일(Jan Huss Day)	7. 6(금)
성 바츨라프 탄생 기념일(Czech National Day)	9. 28(금)
독립 기념일	10. 28(일)
자유화 운동(Velvet혁명) 기념일	11. 17(토)
크리스마스	12. 24(월) - 26(수)

나. 출장 지양기간

7-8 월 기간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 대부분의 휴가시즌으로 담당자들이 휴가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12 월 중순부터 1 월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가는바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한국과 계절 변화가 같으며 사계절이 뚜렷하다. 기온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의복 준비 시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다.

나. 신변 안전

전반적으로 치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 특히 찰스다리, 구시가 광장, 맥도날드 등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귀중품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권 등 귀중품은 호텔의 금고(Safety Box)에 보관하고 사본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날 쓸 만큼의 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에 시내 주요 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시 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주간에도 제 3 국인(3-4 명으로 구성)들이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약 밀매 등의 구실로 신분증, 지갑 등을 수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럴 경우 바로 응하지 말고 경찰 사칭자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신분확인이 곤란할 경우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신고요망)

다. 팁 제도

식당 등에서 팁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종업원이 서비스하는 식당의 경우 통상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응급시

여행 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614-414-476(영어 소통 가능한 radio police) 또는 158 로 경찰에 연락할 수 있으며, 급한 발병으로 앰بول런스가 필요할 경우 158 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마. 문화적 금기사항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체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비즈니스 대화 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현지 한국기관

주 체코 한국대사관

ADD	SLAVICKOVA 5, PRAHA 6 - BUBENEC, CZECH REPUBLIC
TEL	(420) 234-090-411
FAX	(420) 234-090-450
HOME	www.mofat.go.kr/czech/
E-mail	czech@mofat.go.kr

KOTRA 프라하 한국무역관

ADD	VACLAVSKE NAM.47, 110 00,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 245-005-650
FAX	(420) 245-005-651
HOME	www.kotra.or.kr/prague
E-mail	kotra@kotra.cz
주재요원	이규남(관장), 신재빈(차장)

나. 비즈니스관련 현지기관

체코전국공업협회(CONFEDERATION OF INDUSTRY OF THE CZECH REPUBLIC)

ADD	MIKULANSKA 7, 113 61,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 224-915-679
FAX	(420) 224-919-311
HOME	www.spcr.cz
E-mail	spcr@spcr.cz
성격	153개의 대기업 및 경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기관

체코상공회의소(ECONOMIC 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ADD	SEIFERTOVA 22, 130 00, PRAHA 3, CZECH REPUBLIC
TEL	(420) 224-096-258
FAX	(420) 224-096-257
HOME	www.komora.cz
E-mail	info@komora.cz
성격	전국에 88개 지부와 131개 업종별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원수는 약 20,000명

체코 투자청(CzechInvest)

ADD	STEPANSKA 15,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TEL	(420) 296-342-500
FAX	(420) 296-342-502
HOME	www.czechinvest.org
E-mail	czechinvest@czechinvest.org
성격	체코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투자관련 정보제공 및 투자자문 담당

체코무역진흥청(CzechTrade)

ADD	DITTRICHOVA 21,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TEL	(420) 224-907-500
FAX	(420) 224-907-503
HOME	www.czechtrade.cz
E-mail	info@czechtrade.cz
성격	체코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인 국영 무역 진흥 기관

다. 비상 연락처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614-414-476 (영어 소통 가능한 radio police) 또는 158(경찰)로 연락
- 자동차 고장 신고 : 1234
- 교통 사고 : 261-214-141

- 카드 분실 신고
 - Visa, Diner's : 224-125-353
 - Master : 222-412-230
 - Amex : 224-219-992

- 자동차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 224-016-616
- 수도고장시 : 267-310-543
- 전기고장시 : 224-915-151
- 전화고장시 : 13129
- 화재시 : 150

13. 관광명소**가. 관광 정보**

프라하는 대중 교통편이 편리하며 대부분의 시내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다. 구시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출발하는 Tour 회사들의 안내를 받아 시내 관광을 할 경우 짧은 시간에 유용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프라하 시에는 약 160 개의 화랑과 50 여 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무엇이 전시되고 있는가는 프라하 정보서비스(Prague Information Service, www.prague-info.cz)를 통하여 안내서를 구할 수 있으며, 영자 신문 The Prague Post 등을 통해서도 행사와 전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시내의 관광 명소

프라하 시내 관광 명소는 구시가 광장, 바츨라프 광장, 찰스 다리 그리고 프라하 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들 관광 명소들은 각각 도보로 5-10 분 거리에 위치하며 프라하 성에서 출발하여 찰스 다리, 구시가 광장 그리고 바츨라프 광장 방향으로 돌아보는 것이 피로를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장소 별 관광 명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프라하성(PRAHA CASTLE)

○ 프라하 성 연혁

- 9세기 후반 현재의 프라하 성 자리에 작은 성들이 건축되었으며, 1303년 화재로 작은 성들이 소실되었으나 1333년 찰스 4세(즉위 전)의 지시로 프라하 성이 축성되었다.
-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통령실이 프라하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 비투스 성당(ST. VITUS CATHEDRAL)

- 10세기경부터 원형 건물이 있었으나 1344년 찰스 4세 때 성당 건설이 시작되었다. 1873 - 1929년간 건설된 성당 서쪽 부분(신고딕 양식)이 완성됨에 따라 현재의 모습(길이 124M, 최대폭 60M, 최고 높이 100M정도 규모)으로 완공되었다. 성당 지하에는 찰스 4세를 비롯한 수명의 체코 왕 무덤이 있다.

○ 황금 소로(GOLDEN LANE)

- 황금 세공사와 연금술사들이 거주한 지역으로 이 거리를 따라 16개의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으며 비투스 성당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 카프카의 집(황금소로 22번지)

- 카프카는 1916.11월 - 1917.5월간 이 집에서 매일 늦게까지 집필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구시가 광장 거리 18번지에 있는 자기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이 기간 중 많은 단편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특히 프라하 성을 모티브로 한 "성"이라는 작품은 매우 유명하다.

2) 찰스 다리

1342년의 대 홍수로 현재의 다리 자리에 있던 목조 다리(935년 건설) 및 석조 다리(JUDITH 다리, 1170년 건설)가 모두 유실된 이후 1357년 찰스 4세의 명령에 의해 당시 27세인 독일 궁정 건축가인 피터 팔러(프라하성과 비투스 성당도 건축)에 의해 착공되어 1402년에 완성되었으며 중부 유럽에서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다리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이다.

피터 팔러는 구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방어적 역할 수행도 고려하여 다리를 건설하였으며 실제로 1648년 스웨덴 군대가 프라하 성을 공격하려다가 구시가 방향 다리 끝에 있는 탑의 방어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30년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

1870년 찰스 다리로 명명되었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수리되고 가장 최근의 대폭적인 수리는 1974년에 있었다.

1950년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후에는 좋은 산책로가 되고 있으며 겨울을 제외하고는 각종 기념품과 그림을 파는 사람과 악사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밤 늦게까지 붐비는 등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을 연상케 한다.

찰스 다리는 프라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로마의 콜로세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파리의 에펠탑과 같이 프라하 시민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 구시가(STARE MESTO) 방향 탑

- 구시가지에서 찰스 다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고딕 양식의 탑으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탑 중의 하나로 1648년 스웨덴군의 공격을 격퇴한 것을 기념하는 조각품(1950년)이 탑 벽면에 있다.
- 블타바강 방향 쪽에는 1층 중앙에 세인트 비투스, 오른쪽에 찰스 4세, 왼쪽에 찰스 4세의 아들인 바츨라프 4세의 조각상이 있으며 2층에는 보헤미아의 두 성자인 아달버트와 프로코피우스의 조각상이 있다.
- 과거에는 채무자를 위한 감옥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가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하며 138계단을 통해 탑 위에 올라가서 보면 구시가, 찰스 다리, 프라하 성들이 어우러진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 찰스 다리의 성자상

- 찰스 다리의 양편에 있는 각 15개씩 줄지어 서 있는 고딕 및 바로크 양식의 30개 성자상은 1683년부터 1938년간 약 250년에 걸쳐 프라하의 최고 조각가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 중 26개는 1706-1714년 사이에 제작)
- 찰스 다리에 상설 야외 조각 미술관을 개최하려는 아이디어는 로마의 천사 다리(Angel Bridge)에서 따온 것으로 현재 일부 조각은 모조품이며 다른 진품 작품도 점차 모조품으로 대체되고 진품은 프라하 시 미술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 블타바강

- 독일명으로 "몰다우"강으로 프라하 시를 S자 형태로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체코가 자랑하는 작곡가 스메타나(SMETANA)의 교향곡 "나의 조국(MA VLAST)"에 등장. 7개의 다리강 위에 가로놓여 있고 그 중 찰스 다리가 가장 아름답고 오래되었으며 가장 유명하다.

3) 구시가 광장

○ 천문 시계

- 천문 시계의 바깥 원은 청색, 흑색, 그 사이사이에 갈색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낮, 밤, 새벽, 저녁을 나타내며 천문 시계 안쪽 원은 태양, 달, 북극을 상징한다. 천문 시계 밑의 원형은 12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매일을 상징하는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매시 정각 시계 옆 해골 인형이 움직이면서 땡땡 종을 치면 동시에 그 위 두 개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12제자 인형이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 틴교회(GOTHIC CHURCH OF LADY BEFORE TYN)

- 구시가 광장 맞은편 동쪽에 우뚝 솟은 고딕식 쌍둥이 탑으로 1365년에 착공되어 15세기 후반 현재와 같이 80m 높이의 쌍둥이 탑으로 완공되었다.

○ 성 니콜라스 교회

- 구시가 광장 잔디밭 옆의 바로크 양식의 교회로 1732-35년간 건축가 데젠호프가에 의해 건립되었다.

4) 바츨라프 광장

광장의 동쪽 끝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서 출발하여 "나 프리코페" 거리(서울의 명동과 같은 변화가)까지의 길이 750m, 폭 60m 의 대로로 광장이라기보다는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볼르바드에 가깝다. 이 광장은 20 세기 초까지 우시장으로 사용되었다.

1918 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바츨라프 가마상 밑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범이 선포되었고, 1948 년에는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사회주의공화국이 선포되었으며, 1968 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을 때 체코 국민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하였으며, 1989 년 민주화 혁명(벨벳 혁명)의 중심지가 되는 등 체코 근대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 성 바츨라프 기마상

- 10세기경 국난이 닥쳐왔을 때 중부 보헤미아의 그라니크 동굴에서 깊은 잠에 빠진 기사들을 이끌고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의 주인공인 바츨라프(체코 민족의 수호 성인)를 기념하여 1912- 1913년에 성 바츨라프 기마상이 국립박물관 앞에 건립되었다. 이 기마상 앞뒤에 있는 4명의 호위 성인은 1920년대에 추가된 것이다. 동상 앞에는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군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사람(특히 21세의 나이로 분신 자살한 찰스대 학생 Palach)들에게 헌화되거나 1989년 혁명을 기념하여 증정된 꽃, 촛불, 사진들이 놓여 있다.

○ 국립 박물관

- 바츨라프 광장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1885-90년에 건축된 폭 100m 높이 70m의 신 르네상스양식의 건물이며 광물 및 동.식물 표본 등을 전시한 자연 박물관으로 박물관 천정과 1층 방에는 체코 역대 유명 인사의 초상화와 청동 흉상이 전시되어 있다

다. 쇼핑

1) 주요 쇼핑장소

명품 상점들은 구 시가 광장과 유태인 지구 사이의 Parizska 거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헤미안 크리스탈 등 특산품 상점은 구시가광장 주변과 바츨라프 광장 주변에 많이 있다.

2) 특산품

특산품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보헤미안 크리스탈이 유명하며, 그 밖에 석류석(Garnet)도 유명하다.

전통술로는 약초로 담가 위장에 좋은 Becherovka 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체코는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수입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규정 및 EU의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체코의 수입과 관련한 법규는 아래의 EU 규정에 의하고 있다.

- Council Regulation (EEC) no. 2454/93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as amended
-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913/92 of 2 July 1993, laying dow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Council Regulation (EEC) no. 918/83 of 28 March 1983, setting up a Community system of relief from customs duty, as amended
- Council Regulations (EEC) no. 2658/87 of 23 July 1987 on customs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and the Common Customs Tariff, as amended

동 규정의 상세정보는 http://europe.eu.int/eur-lex/en/search/search_lif.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개황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일부 관리 품목을 제외하고는 EU의 공동통상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EU가 역외 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체코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금지품목

일부 동식물, 프레온,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및 화공품과 생화학무기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다. 수입라이선스 제도

원유, 마약, 천연 가스, 무기 및 화약은 체코 산업 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의류, Black Coal, 일부 원자재 및 농산물을 EU 또는 E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라. Labeling 제도

체코에 수입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체코어로 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동 라벨에는 제품명, 생산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일부의 경우 사용법이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섬유제품의 경우 원료 구성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수입쿼터

체코는 대외무역과 관련해서는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EU는 원칙적으로 수입쿼터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역내 섬유업계와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 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고 중국정부와 합의로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17. 관세제도

체코는 2004년 5월 1일부터 EU에 가입하여 EU의 공동 수입규정에 따라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분류 체계는 HS(Harmonized-System) 분류체계를 기초로 EU가 정한 통합분류(CN) 코드에 따른 EU 공통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후 가격에 대해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체코 국내산과 동등하게 부과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19%이며 일부 품목(주로 식품류)에 대해서는 5%가 적용된다.

이외에 유류, 유류제품, 주류, 맥주, 와인, 담배 등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품목별 수입 관세율은 www.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주요인증제도

체코의 규격인증제도는 EU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체코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의 획득이 필요하다.

보안장비류의 경우 CE 마크 이외에도 체코 보험협회(CAP; Czech Insurance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homologation)을 받아야 한다. 동 형식승인은 CAP(www.cicap.cz) 또는 Testalarm (www.testalarm.cz)에서 받을 수 있다.

체코 내 규격인증은 Czech Offic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Testing (www.unmz.cz/index_en.html)에서 관장하고 있다.

19. 지적재산권

체코는 200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특허, 상표,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을 EU 기준 및 WTO TRIPs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학 및 문학작품, 번역, 필름, 케이블 프로그램 및 간행물 등의 지적소유권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수명+70년간 유효하며 예술작품은 수명+10년, 작자미상의 작품과 필름은 처음 발간 일로부터 50년간, 잡지는 최초 간행 일로부터 10년간 법에 의해 보호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에 신청 후 심사기간이 8-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CZK 1,000이다. 상표권은 등록 신청 후 10년간 유효하나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 기간으로 다시 갱신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특허권의 경우 윤리나 공공이해에 반하거나 동물의 양육, 식물의 재배에 관련되거나 병진단과 의료예방에 관련된 것은 발명특허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허 신청 후 심사는 8-12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허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이며 갱신되지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등은 특허 되지 않으며 특허는 서면계약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코 특허청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ADD	Ul. Antonina Cermaka 2a, 160 68 Praha 6 - Bubeneč
TEL	(420) 220-383-111
FAX	(420) 224-324-718
E-mail	posta@upv.cz
Home Page	http://www.upv.cz

20. 소비자보호제도

체코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인 Consumer Protection Act(Act No. 634/1992 Coll.)에 따라 보호 받는다. 동 법령은 1992년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06년에 개정되었다(229/2006 Coll.)

동 법령은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자는 정확한 무게, 규격 및 중량의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사전에 규정되거나 특별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품 혹은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표준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가격 규정에 따라 정확한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또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 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비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실제 제품과 틀리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거나 혹은 모호하거나 과장된 자료 혹은 은닉된 자료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구매 조건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제조물 책임법인 Act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a Defective Product(Act No. 59/1998 Coll.)에 의하여 제품의 하자 등에 따른 제조업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DD	Na Frantisku 32, 110 15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 224-851-111
FAX	(420) 224-221-575
HOME	www.mpo.cz
E-mail	mpo@mpo.cz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DD	Letenska 15, 118 10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 257-042-719
FAX	(420) 257-049-272
HOME	www.mfcr.cz
E-mail	informace@mfcr.cz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Czech Republic)

ADD	Budejovicka 7, 140 96 PRAHA 4, CZECH REPUBLIC
TEL	(420) 261-331-111
FAX	(420) 261-332-784
HOME	www.cs.mfcr.cz
E-mail	podatelna@cs.mfcr.cz

특허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ADD	Ul. Antonina Cermaka 2a, 160 68 PRAHA 6, CZECH REPUBLIC
TEL	(420) 220-383-111
FAX	(420) 224-324-718
HOME	www.upv.cz
E-mail	posta@upv.cz

The Czech Offic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Testing

ADD	Gorazdova 24, 128 01 PRAHA 2, CZECH REPUBLIC
TEL	(420) 224-907-125
FAX	(420) 224-907-122
HOME	www.unmz.cz
E-mail	eu9834@unmz.cz

22. 시장특성

가. 시장규모

체코의 연간 수입규모는 2005년 기준 765억 달러로 EU 신규가입국 중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2위의 수입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1일 EU 가입에 따른 수출호조 영향으로 수입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체코의 인구는 1천만 명 정도로 유럽에서도 소규모 국가에 속하고 1인당 GDP는 2005년 기준 12,152달러 정도이나 현지물가에 따른 구매력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05년에 18,375달러에 달하고 있다.

나. 시장특성

1) 산업특성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산주의 통치를 겪으면서 일반 소비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서비스 부문은 취약했으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서비스 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를 포함한 기계류, 화학, 식품공업 및 유리산업 등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가 전체산업을 계획, 투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산업간 치열한 경쟁은 없으며, 지방특성에 맞게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93년에 제 1차 대기업 민영화를 통해 약 950여 개 기업을 민영화 조치하였으며, '94년에 86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영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2) 소비특성

체코는 과거 동구권 국가 중 제 2의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 비교적 풍족한 소비수준을 누렸으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 월평균 소득이 900달러 미만으로 낮아 중·저가 품목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체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충동구매 성향이 약한 편이고 다소 엄격한 계획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유명 상표에 대한 맹종 현상이 낮은 편으로 상품구입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라 특히 유행상품의 경우 점차 유명상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구매시즌은 소비재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구매가 왕성하며, 7-8 월의 휴가철은 구매활동이 침체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수입업체들은 1-2 월 및 9-10 월에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생활수준은 월평균 명목임금이 2005 년 평균 860 달러 정도로 낮은 편이나 가구 당 2 인 소득, 저렴한 기초 의식주 비용, 교육비 및 의료비의 전액 정부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처 분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며, 특히 운동용품, 레저 용품, 문화 용품 등은 고가품이 선호 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정부의 사유재산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 받은 계층이나 신흥 비즈니스맨 등은 고급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3% 내외는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권의 경우 개방 이후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됨에 따라 인근 서유럽의 대형 유통 업체들이 유통업에 대거 진출하여 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현지 진출 중국인 및 베트남 인 들이 의류, 신발류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의 상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수입상품의 경우 체코는 시장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 선진국의 고급제품, 동남아, 구동구권 등으로부터 수입된 중·저급 상품들이 혼재하고 있어 수입상품 간 품질 및 가격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다. 유통구조

체코 내 유통단계는 수입업자/도매업자, 도매업자(분배업체) 및 소매상의 2-3 단계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1 단계가 생략된다. 수입/도매업체는 소매업체의 소량 주문 수용을 위해 보세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마진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마진율 체계는 대개 1:2:3 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업자 마진율이 10%일 경우 도매업자 20%, 소매상 30%의 마진을 취한다.

프라하 및 주요 지방도시에는 백화점이 있으나 백화점 숫자가 아직 적어 전체 유통분야에서의 백화점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며 서구의 유통 업체들이 대형 하이퍼마켓(TESCO, MAKRO 등) 및 슈퍼마켓 형태로 체코 유통업계에 대폭 진출하고 있어 유통분야의 확대 및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쇼핑몰의 건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라. 한국상품 인지도

현대자동차가 2005 년에 신차 판매 4 위를 기록하고, 체코 내에 생산공장 투자를 추진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판매신장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관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한국업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 제품의 경우 한국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 유망상품

품목	사유	경쟁국
CCTV 카메라	현지수요 증가, 제품경쟁력 보유	중국, 대만, 이태리
셋톱박스	현지수요 급증, 제품경쟁력 보유	중국, 대만
초음파영상 진단기	가격경쟁력 보유	독일
카스테레오	가격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	대만, 중국
액정디바이스	품질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	일본, 대만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사 제품의 체코 바이어를 찾는 방법으로는 KOTRA 의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동 서비스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참관하는 것으로 체코 내 개최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www.bvv.cz
- www.incheba.cz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체코 바이어는 프라하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prague)의 인콰이어리 섹션을 통하여 발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발굴이 가능하다.

- www.kompass.com
- www.abc.cz
- www.czechinfocenter.com
- www.edb.cz
- www.inform.cz

25. 상담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담 일반사항

체코 수입업계의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어떤 회사로부터 특정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제품 공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 3의 기업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코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체코가 아직은 시장개방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관행에 아직 미숙하고 기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래선이 있더라도 정보 수집 차원에서 또는 동 기존 거래선과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 오는 다른 공급선과의 상담을 추진해서 정보를 입수하려 할 것이지만, 체코 기업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관행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시장특성과 수입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가 체코 수입업체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래 관련 종합정보 일괄 송부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 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잦은 교신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희망서신,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처음에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적극적인 사후 관리

거래에 필요한 종합 자료를 송부하고 2-3 주 후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토 결과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체코 업체에서 회신을 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이 송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거래조건 제시 시 유의사항

체코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격을 제시할 때 FOB Korea(Busan) 보다는 CIF Hamburg 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된다.

수출가격은 비교적 여유 있게 책정하되,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특히 첫 거래인 경우)이므로 최대한 낮추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의 체코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 국 대형 수입상을 통해 한국산 물품을 간접 수입해 오고 있다.

즉,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취약한 관계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거래조건(한국 수출업체의 L/C 또는 T/T 선호, 약 2 개월의 인도기간,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량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반면, 소량씩 적기(일주일 내)에 외상(60-90 일)으로 공급해 주는 인근 국 대형 바이어로부터 간접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는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수용하되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 전화/팩스 겸용 전화사용

체코 업체들 중에는 전화/팩스 겸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팩스 송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프라하 무역관에 팩스 전달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 비즈니스 의사소통

일반적으로 체코 무역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능력은 최근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까지도 영어보다는 독일어나 러시아어 실력이 더 나은 편이다.

특히 처음 접촉 시 구두영어(전화) 보다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교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체코 비즈니스계의 이메일 사용은 최근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체코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체코 업체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영어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을 사용하여야 원만한 상담이 가능하다

26.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체코의 경우 오랜 사회주의 생활양식 및 의식이 아직도 중·장년 층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체코 바이어들은 비 L/C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 착수 시부터 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래관행과 자본력 취약에 따른 독일 등 주변국의 수출업자들이 신용거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L/C 거래가 선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주요 은행들이 L/C 개설 시 수입금액의 110%정도의 현금예치를 요구하고 있고 3 개월 정도 자금회전이 막혀 금융 부담이 크고 아직 서구기준의 현대적인 금융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L/C 개설 및 조건변경 등 수속이 복잡한데다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과 아울러 은행을 통한 서류거래로 거래자료가 100% 노출되어 부가세를 피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규모가 커진 수입상이나 대 아시아 교역에 익숙해진 수입상들은 점차 L/C 거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경우 주문과 함께 T/T 로 20-30%의 선수금 송금 후, 선적서류의 사본 확인과 함께 잔금 역시 T/T 로 송금하거나 30%정도의 선수금분만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해 D/P 로 거래하는 방법 이외에 선수금을 T/T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신용장 개설 또는 은행을 통한 D/P 거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L/C 거래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사본을 요청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관하여 처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공항세관 등은 수취인 여부만 확인되면 선적서류 원본 없이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27. 통관절차

수입상은 수입신고서, 수출상이 발행한 송장,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 경우), 위생검사증(산 동물, 육류 등), 식물 병리학 검증서(식물, 채소, 과일류)를 비롯하여 B/L 등을 통관 때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 5. 1일부터 EU에 가입함에 따라 모든 관세율이나 통관절차는 EU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어 EU의 TARIC(The Integrated Tariff of the Community)에 의한 품목별 수입규정에 따르고 있다.

체코에서 TARIC에 추가로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은 조제용 의약품, 독극물, 환경유해 화학제품, 석유제품, 주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특수 목적용 식품, 식품첨가물, 담배류, 제조제 및 농약 등을 들 수 있다.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은 EU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설명서는 체코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 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부착에 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 동식물, 프레온, 체코 내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그리고 생화학 무기 및 핵무기 등은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품목별 수입관련 정보는 www.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8. 운송

가. 국제공항 및 항구

1) 국제공항

체코의 국제공항은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 카를로비 바리의 4개 도시에 있다. 이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프라하의 국제 공항은 Ruzyně 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프라하 국제공항에는 2004년 5월 15일부터 대한항공이 한국과 체코간 직항노선을 주 4회(월, 목, 금, 토) 운항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항공화물은 프라하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2) 항구

체코는 내륙 국가로 국제 항구가 없으므로 주로 서유럽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항구와 체코간에는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나. 주요 운송회사

JAS Forwarding(Czech)	
ADD	Luuna 716/2, 160 00 Praha 6
TEL	+420 220 105 722
FAX	+420 220 105 723
WEB	www.jasczech.cz
E-Mail	general@jasczech.com
Care & Go	
ADD	Velenka 89, 289 12 Sadska
TEL	+420 325 598 150
FAX	+420 325 568 315
WEB	www.careandgo.com
E-Mail	info@careandgo.com
CSKD INTRANS	
ADD	Jana Zelivskeho 2, 130 00 Praha 3
TEL	+420 220 193 522
FAX	+420 220 193 544
WEB	www.intrans.cz
E-Mail	Lukas.Bernard@xxx.cz
ARGO Trans	
ADD	Sokolska 33, 771 01 Olomouc
TEL	+420 585 209 011
FAX	+420 585 209 012
WEB	www.argogroup.cz
E-Mail	argotrans@argotrans.cz
SELECTRA	
ADD	J.S. Baara 838, 405 02 Decin
TEL	+420 412 709 315
FAX	+420 412 709 320
WEB	www.selectra.cz
E-Mail	selectra@selectra.cz
Speed Star	
ADD	K Letisti 57/1049, 161 00 Praha 6
TEL	+420 220 115 410
FAX	+420 220 115 411
WEB	www.speedstar.cz
E-Mail	speedstar@speedstar.cz

29. 분쟁해결 절차

체코의 상사중재제도는 1994 년에 제정된 상사중재법(Arbitration Act)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에 의하여 상사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은 상공회의소에 부속되어 프라하에 위치하고 있다.

상사중재 대상은 국내 상업거래와 관한 사항과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중재인은 상사중재법원에 등록된 중재인 중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단수 또는 복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상사중재법원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하게 된다.

심리(hearing)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프라하의 상사중재법원에서 하게 되며, 체코어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통역을 요청할 경우 상사중재법원에서 통역을 주선하게 된다.

상사중재법원에서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사중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중재대상의 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상사중재비용 및 중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체코 상사중재법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rbitration Court

- 주소 : Dlouhá 13, 110 00 Praha 1, Czech Republic
- 전화 : +420 222 333 340
- 팩스 : +420 222 333 341
- 홈페이지 : www.arbcourt.cz
- E-mail : praha@arbcourt.cz

30. 유형별 분쟁사례

한국과 체코간에 커다란 무역분쟁사례는 없으나,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는 무역거래 행위는 가끔 발생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보장된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대금을 받은 후 납기를 지연하는 경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는 경우,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등이다.

체코 시장의 경우 시장자체가 크지 않아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중요시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금방 동종업계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관련업체의 시장진출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한국 전체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켜 다른 기업의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체코는 자유화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별다른 특혜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인근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1998년 5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 이후 1999년에 63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등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현지화 기준 사상 최대인 8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2005년에도 국영통신회사인 Cesky Telecom 등의 매각에 힘입어 달러화 기준 사상 최대인 110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2000년대 들어 중동부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2005년 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는 595억 달러에 달하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와 독일 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서유럽 국가의 투자가 92.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서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의 체코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6년에 마쓰시타가 프라하 서남부에 위치한 플젠에 TV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일본의 대 체코 투자는 체코의 EU 가입을 전후하여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4위를 기록하는 등 2005년 말 기준 일본의 대 체코 직접투자 누계액의 63%가 2002년 이후 4년간 집중 투자되었다.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US\$ 백만)

국명	2002	2003	2004	2005	2005년 말 누계
네덜란드	1,229	-1,056	2,002	1,985	20,630
독일	4,652	163	758	1,115	12,898
오스트리아	762	484	439	459	6,891
스페인	28	57	68	4,912	5,279
프랑스	142	680	-176	220	3,984
미국	189	154	505	107	3,111
벨기에	437	-253	-52	185	2,337
영국	-220	636	19	231	2,337
스위스	271	136	184	258	1,748
일본	116	328	39	138	981
총계	8,483	2,101	4,974	10,991	59,459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2006. 12월 최신자료)

일본의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분야에서는 독일에 이어 체코에 대한 2위의 투자국가로 특히 2003년 Toyota가 PSA Peugeot Citroen과 합작으로 체코에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진출러시를 보여 현재 약 60 개의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160 개 이상의 업체가 진출하여 2002년부터는 체코가 헝가리를 제치고 일본기업들의 중동부 유럽 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유화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나 EU 가입이 확실하게 된 2000년대 들어 유럽 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제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제 조 업	1,001	2,615	1,012	1,848
- 기계/장비	327	1,651	-39	300
- 기초 금속/금속제품	201	659	505	642
- 정유.화학	255	88	266	496
- 식품/담배	79	104	8	157
- 비금속광물 제품	73	87	1	76
- 기타 제조업	66	26	271	177
금 용 업	1,481	891	764	1,302
무역/호텔/식당	251	654	739	574
운송/통신	4,395	-2,911	270	4,962
부동산	372	440	1,644	1,942
전기/가스/수도	384	249	290	147
기 타	599	163	255	216
총 계	8,483	2,101	4,974	10,991

자료원: 체코중앙은행(2006. 12월 최신자료)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

(단위: US\$천, 건)

연 도	신 고		투 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3	1	1,000	1	1,000
1994	3	10,230	2	3,040
1995	-	-	1	304
1996	-	-	-	5,600
1998	1	28,500	1	28,500
2003	1	5,470	1	5,470
2005	2	10,600	2	10,100
2006(1-9월)	5	997,726	4	90,797
누 계	13	1,053,526	12	144,81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2006년 12월 최신자료)

나. 주요 투자 사례

- 95. 8월 대우 자동차에서 체코 Avia사를 50.2%의 지분 참여 형식으로 인수 투자
 - 중형 트럭 제조, 설비투자 포함 현재까지 총 1억2천만 불 상당 투입
 - 2004년 12월 미국 기업(Odien Capital Partners)에 매각
- LG전자가 Phillips와 50:50 비율로 합작 투자한 LG Philips Display Republic s.r.o
 - CPT 생산(연간 250만개 생산)
- LG전자 체코 판매 법인 설립 (2003.10월)
 - 자본금 500만 유로
- 성우하이텍 오스트라바에 자동차 차체부품공장 투자(2005. 9월)
 - 투자규모 약 1억 5천만 불
- 현대자동차, 오스트라바의 Nosovice에 투자 결정 (2006. 5. 18)
 - 2006년 7월 7일 현지법인 설립. 투자규모 약 10억 유로

주요 주재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	설립일
기아자동차	김경현	93.8
한진해운	박장희	98.1
LG 필립스	조현범	01.9
LG 전자	상태홍	02.9
대한항공	김진호	04.5
삼성전자	이창재	05.5
성우하이텍	심규수	05.11
대우인터내셔널	김철홍	05.12
플라코	양영수	06.3
현대자동차	김억조	06.7
포스코	최일호	06.10

33. 투자환경

가. 개요

체코는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공업 기술 및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등 서유럽 시장과 국경을 접하면서 유럽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서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 들의 EU 내 생산 기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체코는 자유화 이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온 인근 폴란드 및 헝가리 등과는 달리 외국 기업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거의 부여하지 않아 왔으나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체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액 규모 하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인센티브법(동 법에 의해 인센티브를 수혜 한 업체는 Matshushita,

AEG, Siemens, Philips, Toyota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2000년 5월부터 발효한 데 이어 2002년 5월에는 투자 인센티브 대상 투자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2004년 5월부터는 EU 가입에 따라 EU 집행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 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EU 규정변경에 따라 인센티브 최대 지급한도가 낮아질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법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989년도의 체제 전환 이후 2005년까지 이루어진 총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인 595억 달러 중 11%에 달하는 63억 달러를 98년 “투자 인센티브 법” 시행 이후인 99년에 유치하였고, 2000년도 50억 달러, 2001년도 56억 달러, 2002년에는 사상 최대인 85억 달러의 투자가 각각 유입되는 등 99년 이후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다. 2003년에는 주요 국유 기업 매각이 마무리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2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50억 달러를 유치한데 이어 2005년에는 현지화 기준 사상 두 번째이며 달러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인 110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체코 총 제조업 수출의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 고용 인구의 37%를 고용하여 산업생산의 52%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약 1만 여 체코 협력 업체들을 유지하면서 5십만 명의 추가 고용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외국 투자 자본의 유입이 체코의 경제와 고용 안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04년 말 기준 체코는 1인당 외국인 직접 투자액에서 4,052 유로로 헝가리(4,381 유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인 폴란드(1,310 유로), 슬로바키아(2,043 유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나. 대 체코 투자의 장단점

1) 장점

- 지정학적 위치
 - 지리적으로 서구에 가장 근접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내 생산 기지로 유리
- 큰 잠재 수요 시장
 - 비교적 풍족한 소비 생활을 향유하고 있고 순조로운 경제 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내 수요가 대폭 성장될 가능성 높음
 - 장기간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인한 경공업 분야 투자 부족으로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 투자 시 수입 대체 가능
 - 2004년 5월 1일 EU가입으로 EU국가에 대한 수출 시 관세 면제 혜택
- 잘 구축된 인프라
 - 뛰어난 공업 기반, 적정한 임금 수준, 숙련된 노동력과 고급 인력 확보 용이
 - 잘 구축된 도로망으로 물류 비용 최소화 가능
- 지속적인 경제 성장 추세와 투자 촉진 제도
 - CZK 1억 이상 투자 시 정부의 인센티브 수혜 가능
 - 체코 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 자유로운 외환 거래와 이중과세 방지제도 운영

2) 단점

- 인구 1천만 정도로 시장 규모가 영세
- 높은 세금 부담률, 잦은 법령 교체
 - 법인세는 현재 24%가 적용되며, 종업원 급여의 35%에 달하는 사회보장세 등 세금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는 개인 지급 인건비의 거의 2배가 필요
 - 개혁 과도기 현상으로 각종 법령,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고 빈번히 교체되어 기업 경영에 혼선이 초래
- 진출 기업의 현지화 문제
 -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동양인에 대한 차별 의식, 민영화 기업의 대부분이 국내 및 해외 시장 개척 경험이 부족
- 사회주의 노동 문화 잔존
 - 종업원들의 근로 윤리가 자리잡지 못해 구 공산권 시절의 나태한 근무자 세가 많이 남아 있어 잦은 병가 및 휴가 등 노동의 질이 서구에 비해 떨어짐
- 투자 여건 조사를 위한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지에 투입할 전문가 부족
 - 현지 관리가 가능한 현지어가 유창한 한국인을 찾기 힘들고, 현지어구사가 가능 하더라도 대부분 비경영 전공자들이므로 재교육 없이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가 어려움

다. 투자 장려 분야

체코 정부는 체코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부문 및 하이테크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점을 두고 있다.

- 체코 주요 중점 산업 분야
 - Electronics
 - Precision Engineering and Automobile Industry
 - Chemicals and Plastics
- High-tech 산업
 - Micro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als
 - Optoelectronics
- High-tech 서비스 분야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oftware Development
 - Strategic Service : Shared Service Centers, Expert and Solution Provider Center
 - High-Tech Repair Centers

라. 외국인 투자 제한

체코는 기업 인수 이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액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코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그러나 군수산업 및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재무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미디어의 경우 공중파 방송은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등록 절차만 필 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체코 중앙 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는 통상 30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CZK 5 억이며, 체코 내 법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 시에는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 소유가 외국인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지사나 현지법인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체코의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르면 투자 지분에 대한 정부의 허가는 요구되지 않으며, 투자 지분에 대한 대정부 보고 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투자 지분의 해외 외국환 은행 예치도 허용되며 과실 송금 또한 자유롭다.

마. 외국인 투자 보호

체코는 1995 년 12 월 구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경제개발 협력 기구) 회원국이 되면 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한 등에 대한 OECD 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이외에 체코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회원국이며, 국가별로 상호 투자 보호 조약을 체결한 국가 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투자가 보호된다.

바. 투자허가

기업인수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투자 시 체코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체코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체코기업과 동일한 기업설립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투자에 따른 체코정부의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체코투자청인 Czech Invest 에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는 투자대상 산업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1)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절차

- CzechInvest 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CzechInvest 에서 30 일 이내 서류 검토
- 신청서 검토 후 CzechInvest 에서 산업무역부에 신청서 송부 및 산업무역부에서 관련 부처(재무부, 노동사회부, 환경부)에 검토 요청
- 관련부처에서 14 일 이내에 산업무역부에 의견 회신
- 산업무역부는 과당경쟁방지청(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과 협조하여 인센티브 지원규모 사정

- 산업무역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인센티브 지원 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투자인센티브 지원 제안서(Offer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준비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제안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6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무역부에서 “투자인센티브 지원 결정서(Decision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2) Technology Centers 및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절차

- CzechInvest 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CzechInvest 에서 60 일 이내 서류 검토
- 신청서 검토 후 CzechInvest 에서 산업무역부에 프로젝트 평가서를 송부하며, 산업 무역부에서는 동 서류 접수 후 7 일 이내에 관련부처에 검토 요청
- 관련부처에서 30 일 이내에 산업무역부에 의견 회신
- 산업무역부는 관련부처 의견 접수 7 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프로젝트 지원안(Draft Project Support Decision)” 준비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지원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6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무역부에서 투자자 동의서 접수 후 “프로젝트 지원결정서(Project Support Decision)” 발급

34. 투자 인센티브

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1) 인센티브

- 법인세 면제
 - 신규 투자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 기존 기업의 추가 투자에 대하여 10년간 법인세 부분 감면
- 고용창출 보조금(Job-Creation Grants)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 또는 실업률이 평균보다 20% 이상 높으면서 50% 이상 높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I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CZK 200,000 지원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II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CZK 100,000 지원. 장애인 또는 3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자를 고용 시 CZK 25,000 추가 지원
- 교육 및 재교육(Training and Re-training) 보조금
 - 실업률이 전국 평균(2006년 8.64%)보다 높은 지역(I, II, III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35% 지원
- 공장부지 지원
 - 공장 건설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2) 인센티브 수혜 조건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최소투자액(CZK 백만)	100	150	200	200
최소 자기자본 비율(CZK 백만)	50	75	100	100
투자비 중 기계설비 최소 비중(%)	40	40	40	40

- 주: 1. A 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지역
 2. B 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지역
 3. C 지역: 실업률이 전체 평균 실업률 상회 지역

○ 인센티브 수혜 한도

- 인센티브(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제외) 총액은 최대 투자비의 50%(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65%를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수혜한도는 투자지역별로 20%-50% (중소기업의 경우 30%~65%)로 차이
- 자동차산업의 경우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해서는 지역별 수혜한도의 30% 적용
- EU 규정 변경에 따라 2007년부터 인센티브 수혜한도가 최대 40%로 하향 조정

나. Technology Centers & Business Support Services 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1) 수혜대상 투자분야

○ Technology Centers

- 하기의 산업분야에 관련된 하이테크 제품 및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음
- Aerospace
- Computers and office machines
-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 Pharmaceuticals
- Automotive
- Electronic machines
- Chemical products

○ 기업지원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s)

- Customer Contact Centers: 콜센터, 기술지원 등 고객 지원센터
- Shared Services Centers: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재무, 마케팅, 홍보, IT 등 일반 업무 분야의 아웃소싱 센터
- ICT Expert Solution Centers: IT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등 아웃소싱 센터
- Software Development Centers: 외국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High-Tech Repair Centers: 컴퓨터,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항공기 등의 A/S 센터

2) 인센티브

- 영업활동 보조금(Subsidy)
 - 최초 5년간 고정자산 투자액 또는 최초 3년간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급여의 50%까지 보조금 지원
 - 지원 한도는 투자 지역별로 차등(제조업과 동일)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특수 교육: 교육비용의 35%(프라하의 경우30%)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동 사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교육 훈련
 - 일반 교육: 교육비용의 60%(프라하의 경우 55%)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훈련
- 지원 한도
 - 5년간 고용창출 100명 이상 투자: 신규 채용직원 당 CZK 15만 한도
 - 기타 투자: 3년간 신규 채용직원 당 CZK 10만 한도

3) 인센티브 수혜조건

투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nology Centers - Software Development Centers - Expert Solution Centers - Headquar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l Centers - High-Tech Repair Centers - Shared Services Centers (Headquarters 제외)
최소투자	CZK 15백만	CZK 30백만
최소 고용창출	15명	50명
최소 자기자본	CZK 7.5백만	CZK 15백만
기타	Technology Centers의 경우 개발 결과가 생산으로 연결되어야 함	

다. 신규 고용 창출 인센티브

1) 지원대상 투자

- 투자 대상지: 실업률이 가장 높은 Moravia-Silesia 지역 및 서북 보헤미아 지역에 대한 투자
- 지원대상 투자분야: 제조업, Customer Support Centers, Shared Service Centers

2) 인센티브

- 고용 보조금
 - 신규 고용 종업원 1인 당 CZK 20만까지 보조금 지원
 - 2년간 급여의 50%(중소기업의 경우 65%)를 초과할 수 없음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교육비의 35%까지 보조금 지급
 - 최대 종업원 1인 당 CZK 3만 한도

3) 인센티브 수혜 조건

- 최소 투자액: CZK 10백만(리스를 제외한 고정자산 기준)
- 신규 최소 고용창출: 10명
- 최소 자기 자본액: CZK 5백만

35. 타당성조사

해외 투자진출에서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정하여 설명기로 한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초적인 시장상황조사와 함께 투자진출을 가정하고 입지부터 인력고용, 그리고 투자 후 영업 활동, 즉, 구매 > 생산 >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진출 타당성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가. 타당성 조사 시 유의사항

1) 철저한 사전조사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철수기업의 경우, 불충분한 사전조사가 공통적인 실패요인으로 지적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관련 조사와 재산성 조사가 중요하다.

2) 정보의 이중 Check 실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또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정보처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코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경우 EU 가입에 따라 각종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수시 변경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현지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

4) 투자대상국의 로컬기업으로부터 정보 수집

일반 투자환경 조사보고서에서 얻을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복수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영업 경험담 및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5) 신중한 예측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래 예측을 하지만 희망적 관측이 아닌 현실적이고도 조심스런 예측을 해야 한다. 특히 현지 정부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낙관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타당성 조사 체크리스트

1) 생산 및 영업계획의 수립 및 예측

일반 투자환경 정보와 업종별/품목별 시장환경 정보를 입수하여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는 구체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영업계획을 수립 및 예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사업성 검토의 핵심 단계가 된다.

구 분	체크 리스트
판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년도 판매 및 향후 수년간의 판매고 및 가격추이 예측 - 판매촉진 활동 수행 계획
생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제품 재고 수준 - 초년도의 월차 생산량 및 향후 수년간 생산 계획 - 기술지원 관련사항: 기술지원 내용 및 계약기간 등 - 기술자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원자재 조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달 가능 원자재 및 공급원, 품질과 납기, 수송기간 - 현지조달 시 지불조건 등
수입원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해야만 하는 원자재 파악 - 직접 수입 또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한 구매의 장단점 비교 검토 - 품질 및 수입가격(보험료, 관세 등 포함) - 납기 및 지불조건 등
설비조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및 부분품의 현지 조달 가능성 검토 - 주요 공급처, 가격 및 지불조건, 리스 가능성 여부 - 수입해야 할 설비, 수입제한 여부, 수입 비용 등 - 기계설비의 현지 수리 가능여부 등

공장 입지 조건 및 인프라 현황

구 분	체크 리스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및 기후 상황, 지형 및 지질의 공장용지로 적합성 -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 여부 - 토지가격 및 관련 세금 등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자가발전 필요 여부 - 전력 요금체계 및 세금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의 안정공급 가능성 및 저수시설 필요 여부 - 공사비에 수반되는 부담금 및 공사기금 - 상수도 요금 체계 - 사용량 예측 및 비용 산출
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조달용 수송수단 및 수송 소요시간 - 제품수송용 국내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자 확보 가능성 - 항만, 공항 적하장 등의 취급상황 - 해상, 항공 및 육상 수송의 소요일수 및 요금체계 - 통관상의 애로 및 대책

통신	- 통신사정 및 요금체계 등
노동력 확보	- 투자지역의 통근권내 노동인구, 실업률, 연령분포 - 인근 공장의 노동력 확보 상황 - 인근 공장의 작업내용 및 임금수준
건물 물색	- 기초 공사비용 및 기간 - 건축관련 법규, 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 및 절차, 소요기간 - 설계상 유의점(기후상, 법규상 등) - 건축비용 및 건축공사기간 등
설비조달계획	- 기계설비 및 부품품의 현지 조달 가능성 검토 - 주요 공급처, 가격 및 지불조건, 리스 가능성 여부 - 수입해야 할 설비, 수입제한 여부, 수입 비용 등 - 기계설비의 현지 수리 가능여부 등

조직 구성과 인력계획 수립 및 예측

구분	체크 리스트	
관리 및 영업조직	- 조직의 구성 - 파견사원의 역할과 지위	
공장조직	- 조직 구성 - 본사 파견자의 역할 및 지위 - 현지 공장관리자 및 기술자의 구인방법은?	
인력고용	노동력 확보	- 노동력의 이직 실태와 관습 - 노동자의 기질, 기능 수준 - 일반적인 구인방법
	노동 계약	- 노동계약의 일반적인 내용 - 해고의 용이성 및 절차 - 일반적인 퇴직제도
	임금	- 직종별, 성별 임금수준 - 최근 수년간 임금상승률 - 일반적인 임금체계, 최저 임금 등
	복리후생	- 사회보장제(또는 의무보험제도) 관련사항 - 기업 부담분 - 일반적인 복리후생제도의 내용
	취업규정	- 휴가 관련사항 - 취업관련 법적규제
	노동조합	- 노조활동의 특성 및 활발성 여부 - 노동쟁위행위 관련사항
	교육훈련	- 필요한 교육 관련사항
	급여 체계	- 관리 및 판매조직의 급여 체계 - 공장조직의 급여 체계

2) 자본금 및 차입금 조달 계획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현지에서 차입이 가능한지 등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구 분	체크 리스트
설비자금의 차입조달 가능성	- 제도금융의 이용 가능 여부 - 사채 등의 조달 가능 여부 - 현지 금융기관에서의 장기조달 가능성
현지에서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 금리, 차입기간, 자금사용처, 대출액 제한 등 - 담보물건의 범위, 본사 보증 필요 여부 등
외국에서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 외화차입 가능 여부 - 본사로부터의 차입 가능 여부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6.6 월 최신자료)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진출 형태

외국 기업은 체코 내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체코 내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체코에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4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중 외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주식회사(a.s. Joint-Stock Company)와 유한책임 회사(s.r.o.: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며, 주식회사의 경우 프라하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1) 지사(Branch Office)

외국 기업의 지사는 체코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체코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 인수 및 판매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 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 내부 활동에도 적용된다. 지사는 영업 지사와 비영업지사의 두 가지 종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동일하나 세금 적용에 차이가 있다. 2002년 1월부터 지사도 체코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지사 설치 신청서에 지사의 향후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체코인 이나 체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사의 향후 활동 내역 및 최초 지사장을 명기한 체코 내 지사 설립을 승인한 본사 이사회 등의 공증된 결정문
- 영업 내용이 명기된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등 본사 설립 근거 서류
- 체코 영업허가소(Trade License Office)에서 발행된 영업허가서
- 지사장의 공인 사인 증명서
- 지사장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증명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2) 현지법인

□ 유한책임회사(s.r.o. Limited Liability Company)

외국 기업이 체코에 가장 많이 설립하는 현지법인 형태로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최소 1명 이상의 법정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최소 등록 자본금은 CZK 20 만이다. 법정 대표 자는 회사를 대표하며 외국인의 경우 적법한 체코 내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는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등록 자본금의 증감, 이윤의 배분, 회사 청산, 이사 선임 등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
- 공증된 회사 설립 의향서(establishment memorandum)
-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 은행 입금 증명서
- 체코 영업 허가소 발행 영업 허가서
- 법정 대표자의 공인 사인 증명서
- 법정 대표자의 법률 준수 서약서
- 법정 대표자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 증명서
- 사업장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 법정 대표자의 체코 장기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 회사 설립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위임장

□ 주식회사(a.s. Joint-Stock Company)

주로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최소 등록 자본금은 CZK 2백만이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5년을 넘길 수 없고(연임은 가능),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 등록 자본금의 증감, 결산 승인, 이윤의 배분, 청산, 이사회 및 감사 기구의 선출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최소 3명 이상의 감사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사인은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의 1/3은 종업원 특히 노동 조합원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감사인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증된 회사 설립 의향서(establishment memorandum)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주주총회 의사록
-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 은행 입금 증명서
- 체코 영업허가소 발행 영업허가서
- 등기 이사들의 공인 사인 증명서
- 등기 이사 및 감사인 들의 법률 준수 서약서

- 등기 이사 및 감사인 들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 증명서
- 사업장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 등기 이사들의 체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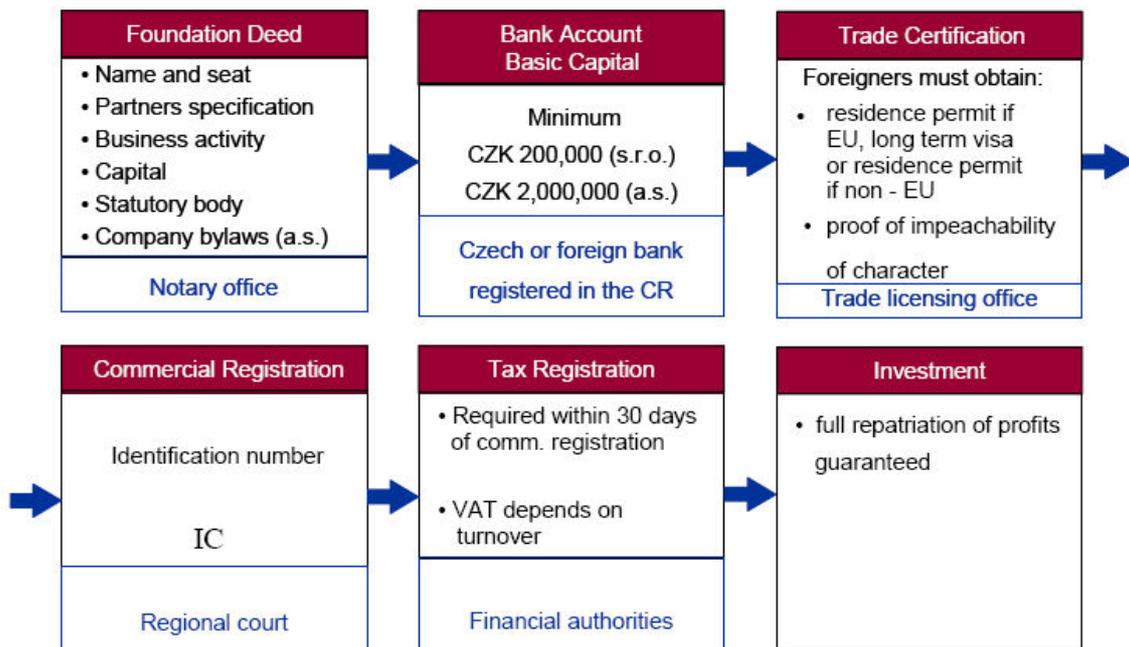
나. 설립 절차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영업 분야별로 영업 허가서를 체코 영업허가소(Trade License Office)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영업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대표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동 대표자가 기업의 영업 허가 조건 충족에 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허가 별로 지명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영업 허가에 대하여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대표자는 체코인이나 체코 내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영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지방법원의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 3 개월이었으나 2005 년 7 월 1 일부터 일주일로 단축되었으며, 인터넷으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다. 투자방식

투자방식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합자, 인수 및 합병 등이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할 경우 단독투자를 할 것인지 혹은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투자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 투자진출 경험이 있고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유능한 현지인을 앞세워 투자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해외 투자진출 경험이 별로 없고, 위험 부담을 낮추기를 원한다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기존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합작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이 쌓이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합작 지분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100% 인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지 파트너 발굴과 선정이 중요하다. 믿을 만한 파트너의 결정을 위한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현지파트너 기업의 분석과 평가

구 분	체크 포인트
파트너 기업의 경영방식, 능력 및 평판	- 경영실적 및 경영수완 -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 및 경영 마인드: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박리다매하지 않고 마진을 중시 하는지,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지 등 평가 - 공장 관리에 대한 경험 - 신뢰성 및 사회적 평판 등
파트너 기업의 연혁	- 설립시기, 설립배경, 설립자 - 주주 구성
재무상황	- 재무 구조의 건전성 - 자금 조달력 등
영업상황	- 시장점유율 및 그 추이 - 영업 및 마케팅 능력
노무관리 상황	- 타사와 비교한 근로자의 성향 - 노동조건 및 노무관리 상황 - 이직율(정착율) 수준 등

합작투자 시 법적으로 정해진 합작투자 계약양식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된다.

- 정의
- 목적
-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 자본금 출자
- 발기인
- 주식의 인도
- 신주 인수권
- 주주총회
- 이사회
-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정책
- 회계 및 회계감사
- 기술원조 및 상호 사용승인
- 계약기간
- 계약의 종료
- 계약종료의 효과
- 권리의 불포기
- 독립성
- 불가항력
- 상호대리의 배제
- 중재
- 계약양도
- 비용부담

37. 입지선정

가. 입지선정 시 유의사항

체코 내 공장설립을 위하여 입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지역의 제반 인프라뿐 아니라 대상 토지의 법적 문제와 동 지역의 인력확보 용이성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체코는 자유화 과정에서 공산화 이전의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관계를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회복해 주어 왔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명확한 토지소유권의 획득이 쉽지 않다. 이는 토지의 현 소유주와 이전 소유주 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체코 등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직장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공장 설립 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지역의 실업률 및 가용 노동인력 등 인력확보 용이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 대상지역의 실업률은 투자 시 인센티브 수혜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주요 지역별 기초정보

지 역	면적 (km ²)	인구 (천명)	노동력 (천명)	실업률 (%)	1 인당 GDP (EUR)
체코 전체	78,868	10,246.5	5,380.1	8.6	14,911
Praha	496	1,180.1	680.8	3.3	33,696
Central Bohemia	11,016	1,154.2	611.9	6.0	12,198
South Bohemia	10,057	627.5	324.7	5.8	13,276
Plzen	7,561	551.1	293.5	6.2	13,701
Karlovy Vary	3,314	304.5	167.8	9.7	11,747
Usti	5,335	823.5	434.8	15.0	11,939
Liverec	3,163	428.9	229.8	7.5	12,190
Hradec kralove	4,758	548.4	278.9	7.0	12,909
Pardubice	4,519	505.9	255.8	7.8	12,330
Vysocina	6,925	510.3	261.0	7.6	11,530
South Moravia	7,065	1,130.8	586.8	9.7	13,956
Olomouc	5,159	639.3	317.5	10.5	11,403
Zlin	3,964	590.5	300.5	8.7	11,722
Moravia-Silesia	5,535	1,251.7	636.4	14.3	12,450

주 1: 인구는 2005.9 월말 기준, 노동력 및 실업률은 2005.6 월말 기준

주 2: 1 인 당 GDP 는 2002 년도 기준 구매력평가에 의한 GDP 임

자료원 : CzechInvest(2006. 12 월 최신자료)

다. 산업단지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1998 년부터 지역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체코 내 대부분의 산업 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2005 년 기준 체코에는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 공단이 200 여 개 있으며, 27 개의 Science and Technology Park 가 설립 또는 건설 중에 있다.

산업공단은 일반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되어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단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대상공단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체코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은 다음과 같다.

1) Center of Industry and Logistic Lovosice

- 위 치 : Lovosice (프라하 서북쪽)
- 규 모 : 50.6ha
- 입주업체 : Tris Czech, Aoyama, TRCZ 등
- Contact : DZCL, a.s.
 - Osvoboditelu 3717, 410 02 Lovosice
 - Tel: +420 416 532 499 Fax: +420 416 532 487
 - e-mail: dzcl@seznam.cz Homepage: www.meulovo.cz/dzcl

2) Liberec-South Industrial Zone

- 위 치 : Liberec (프라하 북쪽)
- 규 모 : 125ha
- 입주업체 : Denso, Toyota Tsusho Logistic, AIRS, Liplastel 등
- Contact : Investorsko Inzenyrska, a.s.
 - Gorkeho 658/15, 460 01 Liberec
 - Tel: +420 485 253 333 Fax: +420 485 253 344
 - e-mail: ii@ias.cz homepage: www.ias.cz

3) Industrial Zone in Kutna Hora

- 위 치 : Kutna Hora(프라하 동쪽)
- 규 모 : 95ha
- 입주업체 : 개발중
- Contact : Investorsko Inzenyrska, a.s.
 - Gorkeho 658/15, 460 01 Liberec
 - Tel: +420 485 253 333 Fax: +420 485 253 344
 - e-mail: ii@ias.cz homepage: www.ias.cz

4) Hrabova Industrial Zone

- 위치 : Ostrava-Hrabova(체코 북동부)
- 규모 : 60ha
- 입주업체 : ASUS, CTPinvest, GE Money Multiservis, 성우하이텍 등
- Contact : City of Ostrava-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 Tel: +420 599 442 286 Fax : +420 599 442 040
 - e-mail: mkolder@mmo.cz homepage: www.mmo.cz

5) Ostrava-Mosnov Airport Industrial Zone

- 위치 : Ostrava-Mosnov(체코 북동부)
- 규모 : 130ha
- 입주업체 : S.W.P Trading 등
- Contact : City of Ostrava-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 Tel: +420 599 442 286 Fax : +420 599 442 040
 - e-mail: mkolder@mmo.cz homepage: www.mmo.cz

6) Brno Industrial Zone-Cernovice Terrace

- 위치 : Brno (체코 동남부)
- 규모 : 179ha
- 입주업체 : Carclo Technical Plastics, Honeywell 등
- Contact : Brno City Municipality
 - Spatial Plann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 Kounicova 67, 601 67 Brno
 - Tel: +420 542 174 104 Fax: +420 542 174 425
 - e-mail: oupr@brno.cz homepage: www.brno.cz

7) Czech Technology Park Brno

- 위치 : Brno
- 규모 : 10.5ha
- 입주업체 : Siemens, FEI, Honeywell Controls, IBM 등
- Contact : Technology Park Brno, a.s.
 - Technicka 15, 616 00 Brno
 - Tel: +420 541 191 111 Fax: +420 541 191 133
 - e-mail: info@technologypark.cz homepage: www.technologypark.cz

8) Industrial Zone Severni Predice

- 위치 : Usti nad Labem (체코 서북부)
- 규모 : 22ha

- 입주업체 : Kone 등
- Contact : City Hall Usti nad Labem
 - Velka Hradebni 8, 400 01 Usti nad Labem
 - Tel: +420 477 010 794 Fax: +420 477 010 682
 - e-mail: petr.nikolic@mag-ul.cz homepage: www.invest-usti.cz

9) D1 Industrial Park Jihlava

- 위치 : Jihlava (체코 중남부)
- 규모 : 22ha
- 입주업체 : Tesla Jihlava, Kronodoor, Krunospan, Kusag 등
- Contact : Jihlava Municipal Council
 - Musarykovo nam. 1, 586 01 Jihlava
 - Tel: +420 567 167 470
 - e-mail: rozvoj.mesta@jihlava-city.cz homepage: www.jihlava.cz

10) Sience & Technology Park

- 위치 : Ostrava (체코 북동부)
- 규모 : 10ha
- 입주업체 : Ingelotric, Elcom, IDS, Siemens Kolejova 등
- Contact : City of Ostrava-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 Tel: +420 599 442 286 Fax : +420 599 442 040
 - e-mail: mkolder@mno.cz homepage: www.mno.cz

11) Industrial Zone Svitavy-Paprsek

- 위치 : Svitavy (체코 동부)
- 규모 : 28ha
- 입주업체 : Fibertex 등
- Contact : Business Park Paprsek
 - Paprsek, 568 02 Svitavy
 - Tel: +420 461 550 320
 - e-mail: vitek@svitavy.cz homepage: www.svitavy.cz

12) Pod Zelenou Industrial Zone - Cesky Tesin

- 위치 : Cesky Tesin (체코 동북부)
- 규모 : 12ha
- 입주업체 : Kovona System
- Contact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Ostrava
 - Na Jizdarne 7, 702 00 Ostrava
 - Tel: +420 595 691 233
 - e-mail: folty@rdaova.cz

13) Karvina-Nove Pole Industrial Zone

- 위 치 : Karvina (체코 북동부)
- 규 모 : 40ha
- 입주업체 : Shimano
- Contact : Mestsky urad Karvina
 - Frystatska 72/1, 733 01 Karvina-Frystat
 - Tel: +420 696 347 024 Fax: +420 696 317 650
 - e-mail: bogoczova@muka.cz

14) Trinec-Baliny Industrial Zone

- 위 치 : Frydek-Mistek (체코 북동부)
- 규 모 : 20ha
- 입주업체 : Gardena Kress & Kastner, Saft, South Africa Breweries 등
- Contact : Mesto Trinec, Mestsky urad Trinec
 - Ul. Jablunkovska 160
 - Tel: +420 659 306 313 Fax : +420 659 321 418
 - e-mail: vera.palkovska@mutri.trz.cz

15) Koprivnice Industrial Park

- 위 치 : Koprivnice (체코 북동부)
- 규 모 : 82ha
- 입주업체 : Dura Automotive Systems, Cirex 등
- Contact : Business Development Centre, Ltd
 - Stefanikova 244, 742 21 Koprivnice
 - Tel: +420 656 893 691 Fax : +420 656 892 589
 - e-mail: cpr@nettle.cz homepage: www.inward.cz

16) Krnov-Cerveny Dvur Industrial Zone

- 위 치 : Krnov (체코 북동부)
- 규 모 : 48ha
- Contact : Mestsky urd Krnov, Department of Development
 - Tel: +420 652 797 234
 - e-mail: knalepa@mukrnov.cz homepage: www.krnov.cz

38. 공장설립**가. 부동산 취득**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체코 내의 부동산 구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체코 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체코 내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가소유 토지가격은

위치 및 크기와 관련한 일련의 변수들을 감안하여 재무부가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하 및 여타 대도시(인구 10 만 명 이상)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다. 또한 국가소유 토지 매각 승인은 재무부 담당이다.

구입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상태 등은 각 지방정부의 토지등기소(Land Registry)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Land Register Extract)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주,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내용, 담보 등 각종 소유권 제한 내용, 거래관계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특정 항목 앞에 “P”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체코에서는 명확한 토지소유권 획득이 쉽지 않은데, 이는 이전 소유권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장 부지 매입 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지방정부의 토지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법적 거래일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도 이날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대상 부동산의 내용 및 매매가격이 명기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계약서상의 선행조건들이 등기신청 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등기가 거부된다.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 등기소에서 신청서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등기결정서(decision on registration)를 발급한 후 부동산 등기부(Land Register)에 기록하게 된다. 등기신청서 제출 후 등기결정서 발급까지는 통상 30 일에서 60 일이 소요되나 프라하의 경우 6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나. 공장 설립절차

구획별 정리법(Zoning Law)이 적용되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규건축허가 이외에도 보건, 위생, 환기, 하수처리 등에 대한 많은 지역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8년 6월 체코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구획정리 및 건축허가 과정을 단순화한 바 있다.

공장설립에는 통상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이미 토지구획 정리가 되어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산업단지 내에 설립할 경우에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용도허가(Planning Permit), 환경오염방지허가(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및 준공승인(Final Approval)이 필요하다.

1)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는 EU 환경영향평가(EIA)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평가 필요성 검토로 시작되며 이에는 2 개월이 소요된다. 필요성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면 공청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며, 이에는 5-10 개월이 소요 된다.

2) 용도허가(Planning Permit)

공장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허가절차로 신청에서 허가까지는 약 1-2 개월이 소요된다. 용도 허가에는 공장설립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 및 투자자 준수사항 등이 명기되며,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3) 환경오염방지허가(IPPC :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로 에너지산업, 야금산업, 화학, 식품 및 일부 원료가공 산업, 제지, 피혁가공, 섬유산업, 석탄산업, 표면처리 산업 등과 같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적용된다. 동 허가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재 가능한 최선의 처리시설 설치조건이 부과된다.

4) 건축허가(Building Permit)

건축 도면 등 건축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허가로 허가 절차에 1-2 개월이 소요되며, 허가서 유효기간은 2년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5) 준공승인(Final Approval)

공장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각종 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지역 건축허가 부서에서 조사한 후 준공승인서를 발급한다. 준공승인을 득한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공장설립에 따른 각 절차와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다.

소요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대상부지 결정															
부지매입 가계약															
현지법인 설립등기															
현지법인 세무등기															
투자인센티브 신청															
환경영향 평가															
용도허가서류 준비															
용도허가															
환경오염방지허가															
건축허가서류 준비															
건축허가															
부지매입 계약															
공장 건설															
생산설비 설치															
준공승인															
생산개시															
인력채용 및 교육															
투자															

다. 공장 건축비용

공장 건축비용은 공장부지의 위치 및 용도, 사용자재, 기반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인 건축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비용
도로	900-2,900 CZK/ m ²
보도	495-950 CZK/ m ²
상수도(직경 400mm 까지)	4,700-15,900 CZK/m
하수도(직경 400mm 까지)	5,930-11,200 CZK/m
전력선 연결(22-35kw 고압선)	1,850-5,100 CZK/m
공장건물	4,200-5,000 CZK/ m ²
사무동	3,000-6,500 CZK/ m ²
부지 정리	120-550 CZK/ m ²
조경	200-2,000 CZK/ m ²

자료원 : CzechInvest, Fact Sheet No.20(2006. 12 월 최신자료)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업무역부)	
ADD	Na Frantisku 32, 110 15 Praha 1
TEL	+420 224 851 111
FAX	+420 234 811 089
WEB	www.mpo.cz
E-Mail	posta@mpo.cz
CzechInvest (체코 투자청)	
ADD	Stepanska 15, 120 00 Praha 2
TEL	+420 296 342 500
FAX	+420 296 342 502
WEB	www.czechinvest.org
E-Mail	marketing@czechinvest.org
Prague Trade License Office (프라하 영업허가소)	
ADD	Staromestske nam. 4/2, 110 01 Praha 1
TEL	+420 222 323 171
FAX	+420 236 007 008
E-Mail	ZIV@cityofprague.cz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SSZ)	
ADD	Krizova 25, 255 08 Praha 5
TEL	+420 257 061 111
FAX	+420 257 063 117
WEB	www.cssz.cz
E-Mail	posta@cssz.cz

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 (VZP)	
ADD	Na Perst ne 6, 110 01 Praha 1
TEL	+420 221 668 111
FAX	+420 224 220 969
WEB	www.vzp.cz
E-Mail	info@vzp.cz
Foreign and Border Police Prague (외국인경찰서)	
ADD	Olsanska 2, 130 51 Praha 3
TEL	+420 974 841 356
WEB	infoscpp@mvcz.cz
Association for Foreign Investments (외국인투자가협회)	
ADD	Stepanska 11, 120 00 Praha 2
TEL	+420 224 911 751
FAX	+420 224 911 779
WEB	www.afi.cz
E-Mail	alzbeta.honsova@afi.cz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주요 법률 및 회계법인

Allen & Overy	
ADD	V Celnici 4, 110 00 Praha 1
TEL	+420 222 107 111
FAX	+420 222 107 107
WEB	www.allenoverly.com
E-Mail	vaclav.valvoda@allenoverly.com
Linkaters	
ADD	Na Prikope 19, 110 00 Praha 1
TEL	+420 221 622 111
FAX	+420 221 622 199
WEB	www.linklaters.com
E-Mail	daniel.cekal@linklaters.com
Havel & Holasek	
ADD	Tyn 1049/3, 110 00 Praha 1
TEL	+420 224 895 950
FAX	+420 224 895 980
WEB	www.havelholasek.cz
E-Mail	jan.holasek@havelholasek.cz
BDO CS s.r.o.	
ADD	Olbachtova 5, 140 00 Praha 4
TEL	+420 241 046 111
FAX	+420 241 046 221

WEB	www.bdo.cz
E-Mail	Vlastimil.hokr@bdo.cz
Deloitte & Touche Czech	
ADD	Tyn 641/4, 110 00 Praha 1
TEL	+420 224 895 500
FAX	+420 224 895 300
WEB	www.deloitte.cz
E-Mail	deloittecz@deloittece.com
Ernst & Young	
ADD	Karlovo namesti 10, 120 00 Praha 2
TEL	+420 225 335 111
FAX	+420 225 335 222
WEB	www.ey.com/cz
E-Mail	ernstyoung.cz@cz.ey.com
Haarmann Hemmelrath & Partner	
ADD	Ovocny trh 8, 110 00 Praha 1
TEL	+420 224 490 000
FAX	+420 224 490 033
WEB	www.haarmannhemmelrath.com
E-Mail	prag@haarmannhemmelrath.com
KPMG	
ADD	Pobrezni 648/1a, 180 00 Praha 8
TEL	+420 222 123 111
FAX	+420 222 123 100
WEB	www.kpmg.cz
E-Mail	kpmg@kpmg.cz
Philipp & Partner, s.r.o.	
ADD	Vaclavske nam. 15, 110 00 Praha 1
TEL	+420 224 218 865
FAX	+420 224 218 873
WEB	www.philippsro.cz
E-Mail	David.philipp@cmail.cz
Pricewaterhouse Coopers	
ADD	Katerinska 40/466, 120 00 Praha 2
TEL	+420 251 151 111
FAX	+420 251 156 111
WEB	www.pwc.com
E-Mail	pricewaterhousecoopers.cz@cz.pwc.com
White & Case	
ADD	Na Prikope 850/8, 110 00 Praha 1
TEL	+420 255 771 111
FAX	+420 255 771 122
WEB	www.whitecase.com
E-Mail	arudisar@whitecase.com

나. 설계 및 건축회사

Hochtief VSB a.s.	
ADD	Primatorska 36/323, 180 00 Praha 8
TEL	+420 283 841 851
FAX	+420 283 840 642
WEB	www.hochtief-vsbs.cz
E-Mail	info@hochtief-vsbs.cz
Konstruktiva Branko a.s.	
ADD	Miluleckeho 1308, 147 46 Praha 4
TEL	+420 244 471 544
FAX	+420 241 490 008
WEB	www.branko.cz
E-Mail	marketing@branko.cz
PSJ Holding a.s.	
ADD	Zeletavska 1449/9, 140 00 Praha 4
TEL	+420 241 485 510
FAX	+420 241 480 333
WEB	www.psj.cz
E-Mail	office-praha@psj.cz
Skanska CZ a.s.	
ADD	Kubanske nam. 1391/11, 110 05 Praha 10
TEL	+420 267 095 111
FAX	+420 267 310 644
WEB	www.skanska.cz
E-Mail	skanska@skanska.cz
Strabag a.s.	
ADD	Na Belidle 198/21, 150 00 Praha 5
TEL	+420 222 868 111
FAX	+420 222 868 211
WEB	www.strabag.cz
E-Mail	pr@bauholding.cz
Unistav a.s.	
ADD	IBC-Pr ikop 6, 604 33 Brno
TEL	+420 545 171 717
FAX	+420 545 171 718
WEB	www.unistav.cz
E-Mail	unistav@unistav.cz

41. 노무관리

가. 노동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서구에 비하여 떨어지는 편이다. 비교적 숙련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나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규정은 공산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노동자들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 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에 관계없이 팀 인원수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공장 인근지에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임금

임금수준은 2005 년 월평균 임금이 CZK 19,030 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명목 임금인상률이 2005 년 5.5%로 매년 6-9%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법정 월 최저임금은 2006 년 7 월 1 일부터 월 CZK 7,955, 시간당 CZK 48.10 이 적용되고 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 현금으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 휴가와 시간외 근무수당

최소 60 일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연간 최소 4 주의 유급휴가(1 년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근무일에 비례)를 주어야 하며, 15 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5 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노동법에 따르면 질병수당, 출산 및 가족부양수당 등의 지급은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에서 지출되며 단지 고용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 책임급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지급규정에 의해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주간/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최저 125%를,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150%를 지급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직업의 성격상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용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만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라. 해고

해고절차 및 조건은 즉시 해고의 경우 서면 해고통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방적인 법적 조치로 이는 해고통보가 일정기간 후에 고용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즉각적인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을 가진다.

즉시 해고는 고용주가 서면에 의해서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유로 특정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효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피고용인측 입장에서 일정한 통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피고용인이 작업 중 심각한 안전위험에 따른 진단서를 고용조직에 제출한 후 고용주가 15 일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다른 적절한 자리로 배치시키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피고용인은 고용계약 해지 통보기간 중 자신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통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시킬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피고용인이 범죄로 1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작업중의 범죄 혹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6 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둘째, 근로규칙을 빈번히 위반하는 경우,

셋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피고용인의 결근으로 인해 국가대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경우이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즉시 해고 사유를 인지한 지 1 개월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해고시켜야 하고, 피고용인의 인식여부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즉시 해고사유가 발생한 지 1 년 이내에 해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즉시 해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즉시 해고는 반드시 사전에 기업 내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즉시 해고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2 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 기간을 거쳐야 한다.

마. 노조

체코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자의 조합가입은 자유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수는 2005 년 6 월 기준 11.2%로 1989 년의 92%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영역은 단체협상(고용자 및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상호간 관계설정)과 통제, 노동법상의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보호, 피고용자 사회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토론 참가 등인데 노동조합은 조합과 경영자간의 상호협정을 제외한 업무협약에 참석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상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0 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노동자들이 감사위원회의 3 인 중 1 명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그밖에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은 없다.

연도별 노동조합 가입자수(명)

	1995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조합원수	2,292,300	1,025,800	829,993	745,367	677,573	610,000

자료원: 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995-2005

바. 사회보장제도

체코 내에서 일하는 모든 체코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험, 실업보험, 질병보험의 사회보장성 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및 종업원이 법률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세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세율

체코의 사회보장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 질병, 실업의 3대 사회보장세 34.0%와 의료보험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35.0%, 종업원이 12.5%를 납부하게 된다.

	고용주(%)	종업원(%)	계(%)
의료보험	9.0	4.5	13.5
연금보험	21.5	6.5	28.0
질병보험	3.3	1.1	4.4
실업보험	1.2	0.4	1.6
총 계	35.0	12.5	47.5

2) 사회보장세 신고 및 납부절차

고용주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신상에 변화(이름 변경, 결혼, 주거지 변경 등)가 생긴 경우에도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당 CZK 2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보장보험의 신고는 각 지역별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CSSZ)에 하며 의료보험은 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VZP)에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분담 분까지 사전 공제하여 매 분기별로 CSSZ 및 VZP의 구좌로 각각 송금하여야 한다.

42. 조세제도

체코의 조세제도는 1993년 1월에 시행된 소득세법(Income Taxes Act, Law 586/1992)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지사를 포함하여 체코 내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법(Accounting Act)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로 납세자가 회계연도(Tax Period)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계연도를 역년(Calendar year)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조치들은 2006년에도 적용되고 있다.

체코의 소득세 제도는 신고납부 제도를 따르고 있다.

가.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24%

현재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하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세율인하 가능성이 높음

□ 기타 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A. 체코 비 거주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등에 부과

세율	적용 대상
25%	License payments, royalties, rents and operating lease payments, copyright payments, payments for technical assistance, business consultancy and other related services
15%	Dividends, profit shares and other related distributions, depository promissory notes
1%	Financial lease payments

B.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일부 세율 감면

- Dividends : 5% 또는 10% (한국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 보유 시 5% 적용)
- Interest : 0% 또는 10% (정부에 대한 경우 0% 적용)
- Royalties : 0% 또는 10% (저작권에 대해서 0% 적용)

나.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과세소득에 따라 15%-32%

과세소득(CZK)	개인소득세
0-109,200	15%
109,200-218,400	CZK 16,380 + CZK 109,000 초과소득의 20%
218,400-331,200	CZK 38,220 + CZK 218,400 초과소득의 25%
331,200 이상	CZK 66,420 + CZK 331,200 초과소득의 32%

다. 부가가치세(VAT) : 19%

- A. 식품류 (과자, 커피, 차 등 포함), 서적, 의약품, 의료관련 서비스, 교통, 문화서비스 등은 5%

라. 소비세(Excise tax)

- B.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에 부과

마. 도로세

- C.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트럭 등 상용 차량의 경우 차축 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됨
D.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연 CZK 1,200 - 4,200, 트럭의 경우 CZK 1,800 - 50,400 임

바.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E.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름

사.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 3%**아. 상속세 : 0.5% - 20%****자. 증여세 : 1% - 40%****차. 사회보장세 : 고용주 부담 35%**

구 분	고용주(%)	피고용인(%)
의료보험	9.0	4.5
연금보험	21.5	6.5
실업보험	1.2	0.4
질병보험	3.3	1.1
총 계	35.0	12.5

43. 외환관리

체코의 외환관리는 '95년 10월 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크라운화의 완전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거래의 완전자유화 및 자본거래의 일부 자유화가 실시(IMF 8 조국)되었으며 체코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완전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구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보유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체코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기비자 취득, 외국인거주 등록, 은행구좌 개설, 자동차 운행등록 등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의 경우 개방 후 98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하였으나, 주택공급이 계속되어 외국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외국인학교 인근(Praha 6)지역의 타운하우스(침실 3-4개 기준) 월 임대료는 EUR2,000-3,000 수준이며, 시 외곽지역은 EUR1,400-1,800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여름이 서늘한 기후 영향으로 냉방장치는 없으나 기타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 설비는 완비되어 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렌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사용료 등은 매월 일정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연간 단위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며, 전화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데 한달 후에 청구서가 나오는 관계로 이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ttp://realestate.expats.cz> 사이트에서도 적당한 집을 물색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

장기비자를 발급 받아 체코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지역별 외국인경찰서에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은행구좌 개설

은행구좌는 주소지만 체코에 있으면 장·단기 체류자 모두 가능하며, 유로화나 달러구좌와 크라운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체코는 외화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어 외화표시 구좌에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송금등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라. 전화신청

임대주택의 경우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명의변경은 집주인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마. 자동차 구입

체코에는 현대, 기아, 대우차가 딜러를 통하여 시판되고 있으며, 정비소도 있어 한국차 구입에 문제가 없다.

체코는 왼쪽 핸들이며, 환경오염 문제로 차 바퀴 뒤에 고무패널과 공기정화기(catalyst) 부착, 헤드라이트 조절기, 상비 약품통, 고장표시 삼각대가 필수이므로 사용하던 차량을 반입할 때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자동차 등록 시 필요).

바. 운전면허 취득

90 일 이상 체코비자 보유자, 장기비자(1년 이상)보유자, 영구거주허가증 보유자는 동 서류에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반드시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에 차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교환 및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운전자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10 년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 신청서 (체코어 서식)
- 한국 운전면허증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식 번역본 (대사관에서 발급)
- 운전자용 건강 진단서
- 여권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거주 허가증
- 컬러 사진 (45x35 mm) 1 매
- 발급 경비 CZK 50

체코 운전면허 증 발급에는 통상 20 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CZK 500 을 납부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사. 식품구입

한국식품점은 프라하에 한 곳이 영업 중이다. 배추, 무, 두부, 양파, 시금치, 당근, 상추, 파, 감자 등 정도는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프라하 외곽지역의 베트남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동양 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한국 식품은 매우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Tesco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하여 있어 일반 생필품 구입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아. 의료

병원설비와 의료기술 자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다.

영어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아래와 같다.

Na Homolce Hospital Foreigner's Clinic	Roentgenova 2, Praha 5 Tel) 257-272-146
Health Centre Prague	Vodickova 28, Praha 1 Tel) 224-220-040
First Medical Clinic of Praha	Vysehradská 35, Praha 2 Tel) 224-923-801
Canadian Medical Care	Veleslavinska 1, Praha 6 Tel) 235 360 133
Unicare Medical Center	Na dlouhem lanu 11, Praha 6 Tel) 235-356-553

애플런스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는 국번 없이 155 번으로 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중전화도 동전이나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약국은(Lekarna) 통상 월-금 08:00-18:00 까지 영업 하며 지역별로 한밤중이나 주말에도 영업하는 약국이 지정되어 있다. 처방약이나 OTC 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자. 레저 및 스포츠

현지의 주요 레저는 테니스, 수영, 스케이팅, 낚시, 스키, 카누, 승마, 사이클링 등이며 최근 골프장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테니스의 경우 지역별로 양질의 클레이 코트와 실내 코트가 많으며 사용료도 저렴한 편인데 이는 테니스가 체코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수영장은 호텔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스케이팅은 프라하 시내에 각 구별로 실내 링크가 있다. 스키의 경우 독일 국경지역,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국경지역,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즐길 수 있다.

차. 치안

치안상태는 아직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급속한 개방에 따른 차량도난, 주택절도 등 치안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대거 유입으로 수도 프라하 중심가에는 소매치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고액 현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매치기는 지하철, 찰스다리, 구시가 광장, 맥도날드 등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다.

체코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나(베트남인 노동자와 중국 불법 이민 등)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소 예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차별 대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복장과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코인들은 주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통하여 한국인을 인식하며 문화, 예술적인 이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카. 한인사회

현재 체코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약 700 명 정도로 2004 년 5 월 KAL 취항 이후 급속 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인회가 2000 년 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 교 등 종교모임도 있으며 이외에도 1997 년 3 월부터 한글학교가 개교 되어 매주 금요일 운영 되고 있다.

타. 자녀 교육여건

체코 공화국 내 모든 교육기관은 무료이며 대학 이하에서 교과서 및 각종 교육자료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초급 교육과정인 6 세부터 15 세까지 9 년이다.

교육제도는 3-6 세 사이에는 유아원 및 유치원에 재학하게 되며 6-15 세까지는 초급학교 교육 으로 의무교육 이다.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음단계로 4 년 과정의 중등교육 과정을 밟게 되는데 중등과정은 대학진학을 대비하는 일반교육과정과 기술과정을 받게 되는 직업학교로 크게 나뉘어진다.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성과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된다. 현재 체코 내에는 대학을 포함해 123 개의 고등교육 시설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는 영어로 교육을 하는 프라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미국계), 영국계 국제학교(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페인 학교 등이 프라하 시내에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한국인 자녀들의 경우 체코 거주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체코 교육기관에 체코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으나 체코어로 수업을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부분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희망해 상기한 프라하국제학교(ISP)와 영국계 국제학교인 BISP 로 진학하고 있다.

주요 외국인 학교

학교명	사용언어	홈페이지
The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영어	www.isp.cz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 Prague	영어	www.bisp.cz
The English International School / Prague	영어	www.eisp.cz
Riverside School Prague	영어	www.riversideschool.cz
The English College in Prague	영어	www.englishcollege.cz
Lycee Francais de Prague	불어	www.lfp.cz
Deutsche Schule Prague	독어	www.dsp-praha.cz
Osterreichische Schule Prag	독어	www.oesp.cz